

# 2012년 금융생활 길라잡이



## 머 리 말

최근 경제가 복잡다기화되고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이 금융지식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취급기관이 많고 가입자격, 금리, 자금운용기간, 세금혜택 등의 조건이 달라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제대로 선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금융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금융생활 길라잡이」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이를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e-book 형태(PDF 파일)로 만들어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경제교육홈페이지와 전자도서관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일을 위한 장기 생활설계, 금융상품과 세금, 예금자보호제도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 각종 금융관련 제도 및 상품 변경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긴 인생향로 설계를 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고 내용을 검토해 주신 금융감독원 조효제 실장, 박한구 팀장, 신한은행 서춘수 지점장 등 유관기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이 용 회

---

# 차 례

I. 금융과 생활설계 .....	6
1. 내일을 위한 장기 생활설계 .....	6
2. 재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금융생활의 기본 준비 .....	14
3. 장기 생활설계에 필요한 금융상품 .....	15
4. 금융과 신용 .....	20
II. 금융상품 고르는 요령 .....	22
1. 목적을 고려한 선택 .....	22
2. 기간을 고려한 선택 .....	23
3. 금리를 고려한 선택 .....	24
4.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을 고려한 선택 .....	26
5.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 .....	29
6. 대출의 현명한 활용 .....	31
III. 금융상품 종류 .....	33
1.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 .....	34
저축예금/ 34	가계당좌예금/ 35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36	단기금융상품펀드(MMF)/ 37
2.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	39
정기적금/ 39	농어가목돈마련저축/ 40
3. 목돈을 불러 나가는 금융상품 .....	42
정기예금/ 42	정기예탁금/ 43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 44	양도성예금증서(CD)/ 45
환매조건부채권(RP)/ 46	기업어음(CP)/ 47
발행어음/ 48	표지어음/ 49
어음관리계좌(CMA)/ 50	특정금전신탁/ 51

4. 주택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	54
청약저축/ 54	주택청약예금/ 55
주택청약부금/ 56	주택청약종합저축/ 58
장기주택마련저축/ 60	장기주택마련펀드/ 61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62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65
5.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	67
연금저축/ 67	주택연금(역모기지론)/ 72
6.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	74
장학적금/ 74	교육보험/ 75
7. 증권투자관련 금융상품 .....	76
증권저축/ 76	금융채/ 77
후순위채/ 78	수익증권/ 79
적립식펀드/ 81	엠브렐러펀드/ 84
랩어카운트/ 85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ELD)/ 87
주가지수연동증권(ELS)/ 87	주가지수연동펀드(ELF)/ 88
회사채펀드/ 90	배당주펀드/ 91
인덱스펀드/ 92	재간접펀드/ 93
뮤추얼펀드(Mutual Fund)/ 94	상장지수펀드(ETF)/ 95
리츠(REITs)/ 96	헤지펀드(Hedge Fund)/ 98
8. 보험관련 금융상품 .....	99
연금보험/ 99	종신보험/ 100
건강보험/ 102	변액보험/ 103
연금저축보험/ 105	장기저축성보험/ 106
C보험/ 108	실손의료보험/ 109
9.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상품 .....	111
상호부금/ 111	신용부금/ 112
종합통장/ 113	

10. 외화예금관련 금융상품 .....	115
외화보통예금/ 115	외화정기예금/ 116
외화적립식예금/ 117	

#### IV. 금융상품과세금 .....

1. 개 요 .....	118
2. 비과세 금융상품 .....	120
3. 세금우대종합저축 .....	122
4.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 .....	123
5. 금융소득 종합과세 .....	126

#### V. 예금자보호제도 .....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	128
2.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예금자 보호 .....	134

### 〈부 록〉

I.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	137
II. 부동산과 세금 .....	152
III.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제도 .....	160
IV.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제도 .....	169
V.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	178
VI.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	181
VII.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경제교육 .....	189
VIII. 한국은행 이용 안내 .....	198

## I. 금융과 생활설계

### 1. 내일을 위한 장기 생활설계

장기 생활설계는 인생 항로의 항해계획과 같은 것입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항해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다음 출발한다면 조수와 풍향에 따라 진로를 조정하고 예기치 않은 악천후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순조롭게 항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기 생활설계는 우리의 경제생활을 ‘현재는 알차게 하며 장래는 불안 없게’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정된 수입을 현재와 장래의 생활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의 생활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 생활설계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장래를 대비한다고 해서 단순히 쓰고 남은 돈을 맹목적으로 저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정도의 돈을 쓰기 위하여 얼마를 저축하고 또는 빌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이자 등을 통해 스스로 불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 예금만 하더라도 상품별로 이자가 천차만별입니다. 저축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 기본적인 금융지식을 갖추고 금융상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나간다면 누구라도 장래에 적절히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년이 되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교육시키고 자녀가 성장해 결혼하고 나면 노년의 생활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기본 생활비 외에 몇 차례에 걸쳐 상당한 목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사

람의 생애 동안 크게 소요되는 목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본인의 결혼자금에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신혼생활의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한 전세자금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마련을 위한 목돈이 필요합니다. 주택가격과 전세금의 변동이 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결혼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고 난 뒤에는 자녀의 교육과 결혼을 위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자녀 교육을 위한 생활설계를 적절히 세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비용은 그들 자신이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얻은 다음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모로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에 필요한 생활 자금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010년 기준 80.8세(남자 79.2세, 여자 84.1세)로서 지난 40년 사이에 19세 정도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86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은퇴 이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할 필요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국가가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와 우리 스스로가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 전에 병들고 다쳐 소득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은퇴 설계를 할 때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기초로 해 다른 노후 보장을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을 함께 들어 놓으면 누구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



## 〈장기 생활설계를 통한 재산 늘리기 실천 계획〉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장기 생활설계를 위한 재산 늘리기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봅시다.

### 자신의 현 위치 파악하기

재산 늘리기 계획을 마련할 때는 전략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상세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단계로 자신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자신의 현재 부(富)를 나타냅니다.

$$\text{자산} - \text{부채} = \text{순자산}$$

자산은 가치가 올라가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 및 실물자산을 뜻합니다. 예금, 채권, 주식, 개인연금 저축액, 주택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TV 등은 수익이 나거나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금, 신용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등 갚아야 할 빚입니다.

#### 나의 대차대조표(예)

(단위 : 원)

자 산	금 액
예금	10,000,000
주식, 채권 및 기타 자산	5,000,000
개인연금 저축액	5,000,000
주택(시가 기준)	300,000,000
<b>자산 합계</b>	<b>320,000,000</b>

부 채	금 액
주택담보대출	50,000,000
신용카드 할부금	1,000,000
자동차 할부금	10,000,000
기타 부채	6,000,000
<b>부채 합계</b>	<b>67,000,000</b>

<b>순자산(자산 - 부채)</b>	<b>253,000,000</b>
---------------------	--------------------

## 재산 늘리기 목표 정하기

앞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 즉 순자산(富)의 규모를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할부금 상환, 자녀의 대학 등록금, 은퇴 후 생활자금 등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장·단기로 나누어 재산 늘리기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습니다.

- |                             |
|-----------------------------|
| 1. 1년 동안 자동차 할부금용 잔액을 상환한다. |
| 2.                          |
| 3.                          |

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습니다.

- |   |
|---|
| 1. 5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 50,000,000원을 모은다.  |
| 2. 10년 동안 자녀 대학등록금으로 50,000,000원을 모은다.  |
| 3. 25년 동안 은퇴후 생활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모은다. |

장·단기 재산 증식 계획은 자신의 현재 순자산, 가구 소득, 가장의 나이, 자녀 수 및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는 젊어서부터 할 필요가 있는데 대략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은퇴 전 생활비의 7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대수명을 감안하여 산출한 총생활비에서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등을 빼면 앞으로 추가로 모아야 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노후 생활자금 계산 사례를 보면, 현재 나이가 35세이고 25년 후인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족한 노후 자금은 약 2억 5,600만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금액이 25년 뒤의 금액이 아니라 현재가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물가 상승(연 3% 가정)을 감안하여 미래가치로 환산하면 약 5억 3,6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각자의 현재 순자산 규모에 따라 추가로 모아야 할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주인공의 예처럼 주택 이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고 주택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라면 부족한 이 노후자금 전액을 지금부터 모아야 할 것입니다.

### 노후 생활자금 계산(사례)

- 현재 연령(동갑내기 부부) : 35세
  - 은퇴 예상 시기 : 60세(25년 후)
  - 은퇴 후 부부 공동생활 : 20년
  - 남편 사후 배우자 단독생활 : 7년
  - 은퇴 후 예상 월평균 생활비 : 월 200만원(현재가치, 부부 공동생활 기간)  
월 150만원(현재가치, 배우자 단독생활 기간)
  - 은퇴 시점에서 본 총노후자금 (A) : 6억 600만원  
(=200만원×240개월(20년) + 150만원×84개월(7년))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B) : 3억 5,000만원
  - 부족한 노후 자금 (A - B) : 2억 5,600만원(현재가치)  
→ 미래가치 환산 : 5억 3,600만원\*  
(물가상승률 연 3%, 25년 후)
- \* 매년 물가가 오르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예상 물가상승률을 연 3%로 잡아 현재 2억 5,600만원의 가치와 동일한 25년 후의 가치를 계산하면 약 5억 3,600만원이 됩니다.

### 통계청 가계소비자지출자료 예상 노후생활비(2010년)

(단위 : 만원/월)

생활수준	전국평균	군지역	시지역	광역시	서울특별시
평균수준	136	106	141	145	169
품위있는 수준	197	150	206	209	251
풍족한 수준	238	179	250	254	306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노후설계·간단재무설계·노후생활비 통계

### 국민연금 연구원 패널조사 월평균 노후생활비(2010년)

(단위 : 만원/월)

생활수준	부부		개인	
	최소노후생활비	적정노후생활비	최소노후생활비	적정노후생활비
전체	121.5	174.6	76.3	112.0
서울	151.6	217.5	95.6	140.6
광역시	124.7	177.0	77.3	113.6
도단위	109.7	158.7	69.2	101.3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노후설계·간단재무설계·노후생활비 통계

## 월별 지출 및 저축 계획 세우기

앞에서 장·단기 재산 늘리기 목표를 정했다면, 이제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과 매월 저축할 목표 금액을 정한 월 예산표를 작성합니다. 현재의 월별 수치로는 월 목표 금액을 저축할 수 없는 경우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 나의 1월 예산(예)

(단위 : 만원/월)

	현재수입	변경수입	새로운 수입계획
급여	3,000,000		3,000,000
투자수익			
이자수익			
수입 합계	3,000,000		3,000,000

	현재지출	변경지출	새로운 지출계획
아파트 관리비	300,000		300,000
주택담보대출 이자	500,000		500,000
전화료(통신료)	200,000	△100,000	100,000
기타	1,500,000	△400,000	1,100,000
지출 합계	2,500,000	△500,000	2,000,000

월별 수치	500,000		1,000,000
-------	---------	--	-----------

저축 가능 금액	500,000		1,000,000
----------	---------	--	-----------

## 금융상품 현황표 작성

금융상품은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분산하여 가입하며, 금융상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무엇 때문에 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지 명확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예금 및 투자 금액, 수익률 등을 언제든지 손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나의 금융자산 현황(예)

(단위 : 원)

	월 저축액	잔액/투자금액	이자율/수익률	만기/예상금액
예금				
1. 정기예금	300,000	1,000,000	5.0%	3년(○○원)
2. 정기적금	400,000	2,000,000	5.5%	10년(○○원)
간접투자자산				
1. 수익증권				
2. 뮤추얼펀드	-	5,000,000	6.0%	1년(○○원)
3. 금전신탁				
4. 적립식 상품	400,000	8,000,000	6.5%	5년(○○원)
채권				
1. 회사채				
2. 국공채				
주식				
1. AAA				
2. BBB				
기타 금융상품				
1.				
2.				
노후 대비 자금				
1. 개인연금				
2. 회사 퇴직금	100,000	6,000,000	5.0%	20년(○○원)
합 계	1,200,000	22,000,000		

지금까지 살펴본 재산 늘리기 실천 계획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수시로 수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계획대로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생활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재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금융생활의 기본 준비

재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 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작은 반면 이자율이 높지 않아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높은 수익 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원 금 손실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에 있어 ‘위험이 크면 수익이 높다(High Risk, High Return)’는 기본 원리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주식을 샀다가 어렵게 모은 소중한 돈을 잃게 된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수익의 자산이 항상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핏 보아 주식이 예금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이 생각 될지 몰라도 그에 따르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습 니다. 그렇다고 주식 등에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기 상황, 투자하려는 회 사의 영업실적과 향후 성장 가능성, 경영자의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한다면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낮추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이처럼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이를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이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하여 투자를 하면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포트 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안전성과 수익성 이외에 환금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장기 생활설계에 필요한 금융상품

금융기관은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이들 금융상품 중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융상품은 크게 예금, 증권 그리고 보험 상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금상품은 대부분 예금하는 기간 동안 확정된 이자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이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이자를 못 받을 위험 또한 거의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상품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봅시다.

#### ◎ 수익이 적으나 안전한 예금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됩니다. 요구불예금은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불해야 하는 예금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맡긴 돈을 언제 찾아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하여 기업에 장기간 대출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곤란해 낮은 이자를 주게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손쉽게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있는 장점을 취하는 대신 이자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요구불예금은 재산을 늘리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수시로 필요한 생활자금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을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에는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당좌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저축성예금은 이자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금입니다. 이 저축성예금은 돈을 불리는 목적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목돈 마

련을 위한 정기적금을 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예금입니다.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가입시 반기로 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입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목돈을 굴리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정기에금이 있습니다. 정기에금은 금리를 미리 정하여 목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맡기는 예금입니다. 보통 만기는 1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등으로 다양하게 있으며 기간이 길수록 대부분은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정기에금도 정기적금과 마찬가지로 만기 이전에 예금을 찾을 경우 가입시 정했던 이자율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정기적금과 정기에금은 은행은 물론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금융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축성예금 중에는 내집 마련에 요긴한 상품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보통 가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과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 ◎ 고수익 고위험인 증권

위에서 살펴본 예금상품은 위험이 낮은 반면 정해진 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좀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증권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권상품으로는 주식과 채권이 있으며 수익증권 등과 같은 간접투자상품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주식·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를 하려면 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직접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원금 손실의 위험도 높고 자칫 자신의 주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에 돈을 믿고 맡겨서 대신 투자하도록 하는 간접투자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상품의 수익은 예금이자보다 높을 수 있으나 자산 운용의 결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손실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또한 수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운용회사 등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간접투자상품은 크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그리고 금전신탁 등이 있습니다.

수익증권은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에 돈을 맡겨 이 돈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입니다. 흔히 ○○펀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익증권인데 펀드는 무엇을 하려고 돈을 모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 채권에 주로 돈을 운용하면 채권형 수익증권이라 하고 주식에 주로 운용하면 주식형 수익증권이라고 합니다. 채권과 주식에 혼합하여 운용하는 혼합형 수익증권도 있습니다. MMF(money market fund)는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어 환금성이 좋은 데다 일정한 수준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인기가 높은 수익증권입니다. MMF는 CP, CD 등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실적대로 돌려줍니다.

또한 수익증권의 투자대상이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실물자산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형 수익증권’ 과 선박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실물간접투자형 수익증권’ 등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투자대상에 다양한 투자전략 등을 운용할 수 있는 헤지펀드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뮤추얼펀드(mutual fund)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즉 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후 투자수익을 실적대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수익증권과 유사합니다. 다만 뮤추얼펀드는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마다 하나의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돈을 주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 발행으로 모은 돈을 채권형은 채권에, 주식형은 주식에 주로 운용하여 돈을 벌어 배당하게 됩니다. 일정기간 환매가 금지되는 폐쇄형 뮤추얼펀드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중간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서류상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비교

구 분	수익증권(투자신탁)	뮤추얼펀드(투자회사)
설 립 형 태	신탁계약	펀드자체가 주식회사
발 행 증 권	수익증권	주 식
투자자의 지위	수 익 자	주 주
운 용 대 상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취 급 기 관	운용 : 자산운용회사 판매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금전신탁은 은행이 일반 예금과 분리된 신탁계정을 통해 운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처럼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돈을 맡긴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결과에 따라서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으나, 운용결과가 좋으면 예금이 자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일반 예금과 구분하기 위해 이러한 금융상품을 실적배당상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보험은 기본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분담금을 모아서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에는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생사(生死), 상해, 장해, 질병 등으로 개인이 소득상실의 위험에

처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며, 손해보험은 화재, 도난 등 우연한 사고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소득수준과 자신이 처해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장기간 위험을 담보하므로 중도에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통상적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일단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에는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가 보험계약 모집 비용 및 다른 가입자에 대한 지급 보험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 또 하나의 투자상품, 부동산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존재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을 부동산이라 부릅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은 해당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수익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얻는 자본이익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큰 금액이 소요되고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금융을 접목하는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 trusts)와 부동산간접투자형 수익증권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은 금융기관이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얻은 운용 수익을 가입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은 거액이 소요되는 부동산 투자자금을 소액으로 증권화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투자에 따른 이익을 다수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4. 금융과 신용

개인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려면 항상 신용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금융생활에 있어서 신용이란 한마디로 말해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이 좋다는 것은 곧 빌려간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항상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이 좋은지 여부를 따져보고 빌려줍니다.

현대사회를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신용사회일 것입니다. 신용사회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용이 있으면 돈을 빌려 물건을 사거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을 매개로 하여 더 많은 물질적·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그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신용거래를 이용하려고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거래를 통해 당장 물질적·금전적 혜택을 누릴지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경우 금융기관에 수수료나 연회비와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료와 같은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신용은 등급이 매겨지고 관리됩니다.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서 보낸 각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금액, 보증제공 내역,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서비스 이용실적, 금융거래대금 연체 사실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조회하여 거래 신청의 승인 여부와 함께 이자율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이 우수한 사람은 대출금리, 할부수수료, 신용카드 이용한도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되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거래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신용이 양호한 사

람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연체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현재와 미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부채한도를 설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대금 결제일, 대출금 이자 납부일, 이동통신 사용요금 납부일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결제계좌의 잔고를 확인하여 본인의 아니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자는 금융거래를 포함한 사회생활에서 매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이 거절되거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있어서는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각종 생활용품의 신용 할부구매시 제약을 받게 되며 취직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신용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전국은행연합회, 개인신용조회업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도 채무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용 상태를 잘 고려하여 제공하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이 대신 갚을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만 하여야 합니다.

## II. 금융상품 고르는 요령

금융상품은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다양하고 종류가 매우 많은데다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어 어떤 금융기관의 어느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안전성, 수익성 그리고 환금성의 3가지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저축의 목적이거나 기간, 부대서비스의 내용 등 현실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감안하여 적합한 상품에 가급적 분산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의 수입이나 재산상태,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마련, 자녀교육, 노후생활 준비 등 구체적인 장기 저축목표를 세운 뒤 이를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저축을 생활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장기 생활설계를 위한 재산 늘리기의 첫 걸음인 금융상품 선택을 위한 다섯 가지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목적을 고려한 선택

금융상품의 선택기준은 돈을 모으려는 목적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모은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것인지, 돈을 모은다면 왜 모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융상품에는 주택마련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목적에 따라 특화되어 개발된 장기 저축상품이 있고 가계 여유자금을 단기간 운용하는데 적합한 상품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진 상품도 있습니다.

우선 목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주택마련자금을 모으려면 주택청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적금을 열심히 부어서 목돈을 마련했는데 이를 좀더 불리고 싶다면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금전신탁,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축목적별 주요 금융상품	
저축 목적	주요 금융상품
주택자금 마련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펀드 등
노후생활자금 마련*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연금보험, 역모기지론 등
목돈 늘리기	정기예금, 금전신탁,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변액보험 등
자녀교육비 마련	장학적금, 교육보험 등
생활안정성 확보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암보험), 손해보험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저축	상호부금, 신용부금 등

\*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있음

## 2. 기간을 고려한 선택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언제 필요할 것인지를 예측한 다음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금리만 보고 무조건 장기 금융상품에 돈을 맡겼다가 급한 사정 등으로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거나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게 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자금 지출계획과 저축기간을 일치시키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장기 저축자금과 단기 운용자금을 구분하여 기간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한 금융상품을 그냥 놓아두면 만기 후에 약정금리보다 낮은 이자가 적용되거나 이자가 추가로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돈이 언제 필요한지에 대하여 계획을 잘 세워 적절히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저축기간별 주요 금융상품							
구 분	은 행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1개월 이내	저축예금, MMDA	MMF	RP, CMA		CP, CMA	저축예금	예탁금, 보통예금
1~3개월 이내	표지어음, RP, CD, 정기예금	MMF, 단기수익증권 (채권형)	RP, 단기수익증권 (채권형),CMA		표지어음, CP, CMA		예탁금, 표지어음 (상호저축은행)
3~6개월 이내	표지어음, RP, CD,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단기수익증권 (채권형)	RP, 단기수익권 (채권형),CMA		발행어음, 표지어음, CP, CMA	RP	예탁금, 표지어음 (상호저축은행)
6개월~1년 이내	표지어음,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중기수익증권 (채권형/주식형)	중기수익증권 (채권형/주식형)		발행어음		정기예금, 예탁금
1년 이상	정기예금, 금융채, 연금 신탁, 맞춤형 특정신탁, 주택관련저축	장기수익증권 (채권형/주식형), 연금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증권저축, 회사채, 국공채, 장기수익증권 (채권형/주식형)	장기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정기예금, 연금보험	정기예금, 예탁금, 연금 보험(공제)

\*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판매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음

### 3. 금리를 고려한 선택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금리입니다. 금리란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금리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단리와 복리로 나눌 수 있으며 확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금융상품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단리와 복리, 확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 단리와 복리

단리란 예금의 만기에 이자를 1회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고 복리는 만기이전에 일정기간 단위(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안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 10%의 금리로 은행에 2년간 예금할 경우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단리 방식으로는 120만원( $100\text{만원} \times (1+0.1 \times 2)$ )이 되지만 복리 방식으로는 121만원( $100\text{만원} \times (1+0.1)^2$ )이 됩니다.

##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른 금리 구분법입니다. 즉 고정금리란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변동금리는 가입 후 만기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품 가입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변동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며, 그렇지 않다면 고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4.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을 고려한 선택

안전성은 어떤 금융상품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어떤 금융상품이든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보전하는 데 위험이 따릅니다. 금융거래 위험에는 거래 금융기관 또는 증권 발행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과 금융상품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하락위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정할 때는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지 또 해당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V. 예금자보호제도 참조)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회사채를 사는 경우에도 최소한 원금을 지켜 줄 수 있는 회사인지를 따져 본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은 확정금리형 상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데다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일수록 위험도 큰 만큼 여유자금을 특정 금융상품에 집중시키지 말고 안전성이 다른 몇몇 상품에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량 금융기관 판단지표		
구분	주요 경영지표	공통 사항
은행, 종합금융회사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부실여신비율	– 경영공시 내용
증권회사	· 영업용순자본비율	– 감독당국의 경영평가 결과
자산운용회사	·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 국제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보험회사	· 지급여력비율	– 최근의 주가수준 등

수익성은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주식의 경우 향후 주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와 주식발행 회사가 결산 후 지급하는 배당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이자 수입이 매 정해진 기간마다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비교해 보면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높은 것은 위험이 높든지 환금성이 떨어지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각 금융기관이 수익률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표면금리 이외에 이자지급 방법, 세금우대 여부 등 수익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수익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두 반영한 다음의 세후 실효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익률 관련 용어		
종 류	주 요 내 용	비 고
명목금리	돈의 가치변동,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	돈의 가치 즉 물가 변동 고려 여부
실질금리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	
총수익률	만기까지 받는 총수익의 투자원금에 대한 비율	-
연 평균 수익률	만기가 1년 이상인 상품에 있어서 만기까지의 총수익률을 계약 연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익률	
표면금리	예금증서, 채권 등의 표면에 기재된 이자율을 말하며, 단순히 연간 이자수입만을 나타내는 금리	-
실효수익률 (연수익률)	원금, 이자 및 그 이자의 재투자수익 등을 모두 더한 총수입금액의 원금에 대한 1년 단위 증가율	실효수익률에서 세금까지를 고려한 세후 실효수익률이 금융상품 선택 기준이 됨

환금성 또는 유동성이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유 자산을 별다른 손해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만기가 장기인 적금이나 예금 등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크므로 환금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손쉽게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환금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그러나 환금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수익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한 단기 대기성 자금이나 일상의 생활자금에 한해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워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금성 수준별 주요 금융상품	
구분	주요 금융상품
환금성이 높은 단기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MMDA, RP, CD</li> <li>-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등</li> <li>- 만기 1년 이내의 상품 :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의 CMA, 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의 MMF, 단기수익증권, 개방형 뮤추얼펀드 등</li> </ul>
환금성이 낮은 장기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만기 1년 이상 상품 : 저축성예금, 신탁상품 및 금융채</li> <li>- 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의 장기 수익증권, 폐쇄형 뮤추얼펀드 등</li> <li>-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상품 등</li> </ul>

## 5.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주는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세후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실효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금융상품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 14%에 대한 10%)를 포함하여 전체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세 금융상품은 일반 서민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나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또는 감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도 선택대상으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저축금액 전부 또는 저축금액의 일정비율 한도 이내에서 세금 절약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 세금우대 및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

저축 종목		주요 상품명
비 과 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신탁(펀드·보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출자금
	신용협동기구 예탁금	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만기 10년 이상의 보험
	생계형저축	저축예금, 정기예적금, 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장기회사채형펀드	거치식으로 가입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세 금 우 대	세금우대종합저축	정기예적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은행 금전신탁, 수익증권, 채권저축, 보험저축 등 (9.5%)
소 득 공 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전체를 합하여 300만원)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72만원), 연금저축(40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장기주식형펀드(60만원~240만원)
	보장성보험	100만원

\* 세부내용은 「Ⅲ. 금융상품 종류」 및 「Ⅳ. 금융상품과 세금」 편 참조

## 6. 대출의 현명한 활용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빚을 얻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한데 모아 놓은 돈으로 부족하다면 빌려서 충당하고 나중에 갚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기 생활설계에 따라 돈을 모으더라도 목표했던 금액보다 돈이 덜 모아졌다든지 당초 예상보다 지출금액이 많아진다든지 하여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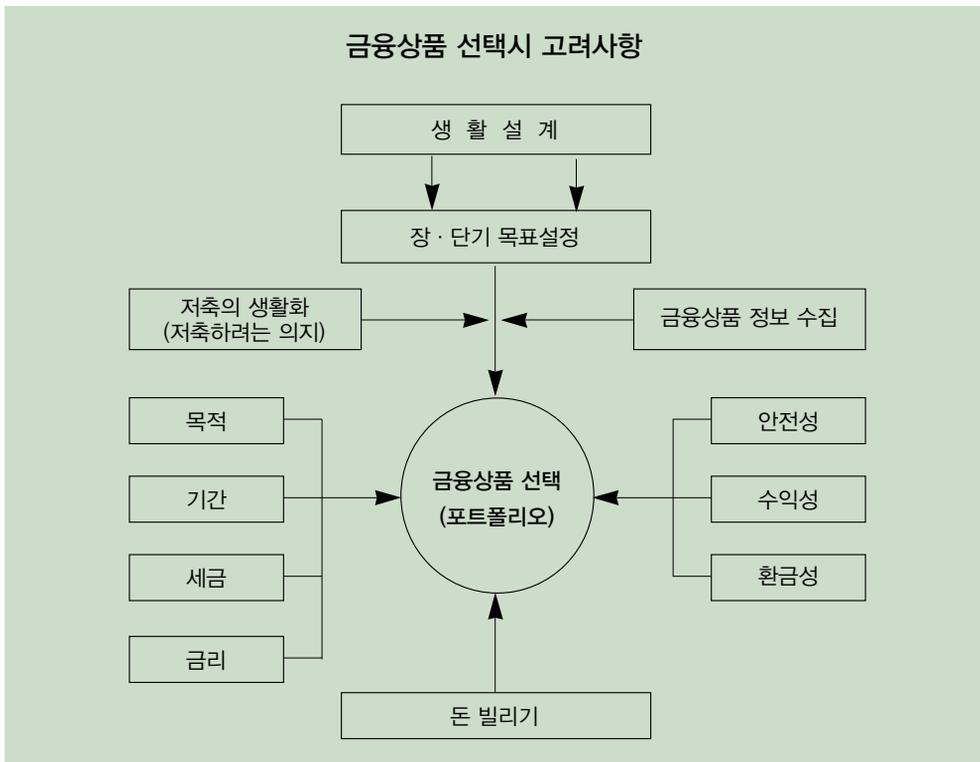
돈 빌리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에 큰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꾸준히 돈을 모아 빚을 지지 않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종자돈이 모이면 장기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여 빚을 지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상승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리하나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는 데까지만 빌리고 또한 이자와 원금은 약속한 대로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자나 원금을 기한 내에 갚지 않아 연체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새로운 대출을 받기 곤란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을 독촉 받게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소득으로 정해진 시기에 대출 이자를 지급하면서 장래에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을 모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출금 상환방법에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과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함께 갚아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입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갚아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대출 만기도 무작정 만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금계획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

상품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으며 중간에 돈이 생겨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출상품의 이자율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 별로 대출상품을 꼼꼼히 비교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자가 낮은 기관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개발·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단골 고객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예금 또는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가의 채테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금융기관을 주거래 기관으로 정해 놓고 수시로 재산 증식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Ⅲ. 금융상품 종류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저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형태의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해보면 ① 수익률이 낮은 반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② 적은 돈을 매월(매분기)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③ 일정규모 이상의 목돈을 불러나가는 상품 ④ 주택자금, 노후자금, 교육자금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 있고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개발·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을 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선택 못지않게 수익성, 환금성, 안전성 및 부대서비스 내용 등 여러 금융상품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 보고 각자의 저축목적에 부합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국민들이 금융상품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정보를 상품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1.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

### [ 저축예금 ]

보통예금처럼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입니다. 가계우대성 금융상품으로 가계의 여유자금을 초단기로 예치하거나 입출금이 빈번한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 상품특징 : 수시입출금식, 복리이자 지급

◆ **취급기관** :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가입좌수·예치기간·가입한도** : 제한 없음

◆ **금 리** : 연 0.1~4.0%(2011. 12월 현재)

\* 대부분의 은행이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적용

◆ **이자계산** : 통상 결산기(매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평균 예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후 원금에 가산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 ◆ 참고사항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 저축예금 등)중 일부상품만 취급하거나 이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잔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은행의 저축예금과 유사한 상품인 '자립예탁금'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대월약정을 맺으면 약정한도까지 대출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음

세금혜택 비교			
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적용세율	15.4% (소득세14% + 지방소득세 <sup>1)</sup> 1.4%)	9.5% (소득세9% + 농어촌특별세0.5%)	0%
가입한도	-	· 일반인: 1,000만원 · 노인및장애인: 3,000만원 · 미성년자: 1,500만원 <sup>2)</sup>	3,000만원
대상	-	· 노인, 장애인등 <sup>3)</sup>	· 노인, 장애인 등 <sup>3)</sup>

주: 1)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2) '05년말까지 가입분에 한함  
 3) 노인(남녀 만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5·18운동 부상자 외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 [ 가계당좌예금 ]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이며 무이자인 일반 당좌예금과는 달리 이자가 지급되는 가계우대성 요구불예금입니다. 가입대상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로 제한됩니다.

▣ **상품특징** : 가입대상 제한, 수시입출금식, 가계수표 발행용, 복리이자 지급

◆ **취급기관** : 은행

◆ **가입대상** :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 자영업자(일반적으로 신용평가 결과 평점이 60점 이상인 자에 자격 부여)

◆ **예치한도** : 제한 없음

◆ **수표 1장당 발행한도** : 자율화(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 100만원 이내, 자영 업자 500만원 이내임)

◆ **금 리** : 연 0.1% 내외(2011. 12월 현재)

◆ **이자계산** : 통상 결산기(매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평균 예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후 월금에 가산

- ◆ **대월한도** : 예금자의 신용을 감안하여 설정
- ◆ **대월기간** :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은행별로 1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 **참고사항**
  - 모든 은행에 걸쳐 1인 1계좌만 거래 가능
  - 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대월한도 범위내에서 자동대월이 가능하며 거래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소액가계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음
  - 가계수표는 예금잔액 및 대월한도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대월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하게 되면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상품입니다.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 **상품특징** : 수시입출금식, 다양한 부대서비스, 복리이자 지급

- ◆ **취급기관** : 은행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예치기간·가입한도** : 제한 없음
- ◆ **금 리**

금 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금리(연 %)	0.1~0.2	0.1~0.5	0.2~2.1	0.4~2.2	0.8~2.3

\* 2011. 12월 현재

- ◆ **이자계산** : 통상 매일의 잔액에 해당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 후 매일 원금에 가산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 **참고사항**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다른 단기 시장성상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낮은 수준임
  - 예금거래 실적에 따라 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면제, 대출·예금금리 우대, 각종 공과금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 타행환 송금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다만, 일부은행의 경우 이를 불허하거나 자동이체 설정 건수를 제한)
  -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상품펀드(MMF) 등과 경쟁 상품임

### [ 단기금융상품펀드 ] (MMF : Money Market Fund)

자산운용회사가 여러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 신탁상품입니다. 최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고, 환금성이 높은데다 시중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소액 투자는 물론 언제 쓸지 모르는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한 저축수단입니다.

▣ **상품특징** : 수시 입출금 가능, 실적배당

-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 **거래금액** : 제한 없음
- ◆ **저축기간** : 제한 없음

◆ **배 당 륜** : 실적배당

\* 은행의 6개월 정기예금 금리 수준

◆ **수익계산** : 인출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

◆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은행의 MMDA, 증권사/종합금융회사의 CMA 등과 경쟁상품이며, 증권계좌와 연결하여 대기자금을 예치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임
- MMF의 경우 운용가능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AA등급 이상(기업어음 A2 이상)으로 제한하여 운용자산의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자산 전체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2.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 [ 정기적금 ]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예금으로 풍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가장 보편적인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정기적금은 일반 정기적금과 가계우대 정기적금으로 구분되며, 필요시 적금을 담보로 납입한 적금잔액의 일정범위(통상 95%)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반 정기적금 >

▣ **상품특징** : 적금담보대출 허용

- ◆ **취급기관** :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예치기간** :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월단위로 정하며, 자유적립식의 경우 일단위로 정할 수도 있음(최고 36개월로 제한한 은행도 있음)
- ◆ **저축한도** : 최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저축한도 제한은 없음
- ◆ **금 리**

기 간	6개월	1년	2년	3년
금리(연 %)	2.4~3.6	2.9~4.1	3.3~4.4	3.6~4.6

\* 2011. 12월 현재 예금은행 기준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신용협동기구는 2012년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예·적금 합계 3,000만원 한도, 농어민·저소득근로자가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 1.4% 과세)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 **참고사항**

- 만기 후에는 적용금리가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2 이하로 크게 낮아지는데 유의하여야 함
-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가계우대 정기적금** 〉

- 개인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통상 특별금리를 가산해 줌
- 기타 조건은 일반 정기적금과 동일하며 가계우대 정기적금을 따로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일부 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목돈마련에 유리한 3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에게는 기본금리 이외에 법정장려금리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 **상품특징** : 가입대상 및 한도 제한, 법정장려금리 가산, 비과세

◆ **취급기관** : 단위농협, 지구별·업종별 수협

◆ **가입대상**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ha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li> <li>■ 20t 이하 어선 소유 어민</li> <li>■ 일정규모(예: 젓소 20마리) 이하 가축 소유 양축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ha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li> <li>■ 무동력선 또는 비어선 사용 어민</li> <li>■ 일정규모(예: 젓소 10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타인의 양축업에 종사하는 양축가</li> </ul>

- ◆ 예치기간 : 3년 또는 5년
- ◆ 납입방법 : 월납, 분기납, 반기납
- ◆ 가입한도 : 월 5,000원 이상부터 12만원(연 144만원)까지  
단,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는 월 10만원(연 120만원) 이내
- ◆ 금 리(연 %)

구분	기간	기본금리(A)	장려금리(B)	계(A+B)
일반 농어민	3년	5.5	1.5	7.0
	5년	5.5	2.5	8.0
저소득 농어민	3년	5.5	6.0	11.5
	5년	5.5	9.6	15.1

\* 2011. 12월 현재

- ◆ 세금혜택 : 비과세(2014년말까지 가입자에 한함)
- ◆ 예금보호 여부 : 자체적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보호
- ◆ 참고사항
  - 농어민의 계절적인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또는 반년 납부도 가능함
  -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특별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상속세 부과되지 않음
  - 가입한도는 가구단위로 계산하며 한도내에서는 여러 계좌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음

### 3. 목돈을 불러 나가는 금융상품

#### [ 정기예금 ]

계약시 저축기간과 금리를 미리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장기 저축성예금입니다. 대개 약정기간이 길수록 높은 확정이자가 보장되므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이자를 매월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목돈을 맡겨 놓고 이자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월이자 또는 복리이자 지급, 중도해지시 낮은 금리 적용

- ◆ **취급기관** : 은행,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 ◆ **가입대상·예치한도** : 제한 없음
- ◆ **예치기간** : 1개월 이상 5년 이내
- ◆ **금 리** : 확정금리

구 분		3개월	6개월	1년	2년
금리(연 %)	예금은행	1.9~3.7	2.2~3.8	2.6~4.2	2.7~4.3
	저축은행	2.1~4.2	3.2~4.4	4.0~4.9	4.1~5.1

\* 2011. 12월 현재

- ◆ **이자계산** : 매월마다 이자 지급 또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복리)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 ◆ **참고사항**
  -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상 예금잔액의 95% 범위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 정기예탁금 ]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신용협동기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하므로 일반 서민들의 목돈 운용에 적합한 저축수단입니다.

▣ **상품특징** : 가입대상 제한, 비교적 높은 금리,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 ◆ **취급기관**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 **가입대상** : 조합원·준조합원 또는 회원
- ◆ **예탁금액** : 제한 없음
- ◆ **예탁기간** : 5년 이내
- ◆ **금 리** : 확정금리

기 간	3개월	6개월	1년	2~3년
금리(연 %)	2.5~3.6	3.2~5.1	3.8~4.8	3.9~5.0

\* 2011. 12월 현재 신용협동조합 기준

- ◆ **이자계산** : 매월 이자지급식 또는 만기 일시지급식
- ◆ **세금혜택** : 3,0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시한은 2012년까지 (단, 농어민·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1.4% 부담)
- ◆ **예금보호 여부** : 별도의 기금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
- ◆ **참고사항**
  - 은행권의 비과세혜택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신용협동기구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 범위내에서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농어민·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1.4% 부담)되므로 여유자금을 장기는 물론 1년 미만의 단기로 운용하기에도 좋은 상품임

##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신용협동기구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출자금은 이들 신용협동기구의 자본금이 되며, 조합원 등은 출자금액에 따라 매년 조합의 이익을 배당받게 됩니다. 신용협동기구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1인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축수단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며, 출자금액에 따라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특징** : 조합원 등의 자격 취득, 비과세

◆ **취급기관**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가입대상** : 지역 또는 직장 등의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

◆ **가입좌수·금액** : 1좌 이상(좌당 금액은 보통 1천~1만원)

◆ **배당방법** : 매년 조합 등의 이익을 출자금액에 따라 배당

◆ **세금혜택** : 비과세(1인당 1,000만원 한도)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 등이 되어야 신용협동기구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3,0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에금 ]

가입후 일정기간마다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적용금리를 변경하는 예금으로 금리상승기에 적합한 금융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실세금리 연동형

- ◆ **취급기관** : 은행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가입한도** : 제한 없음
- ◆ **가입기간** : 통상 3년 이내(은행별 상이)
- ◆ **금 리**

기 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금리(연 %)	2.0~3.2	2.3~3.5	2.7~3.6	3.0~3.6
* 2011. 12월 현재				

- ◆ **이자계산** : 만기지급식, 월이자지급식, 회전기간별이자지급식 등  
(계산방법별로 이율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 **참고사항**
  - 실세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금리상승기에 가입하면 유리함
  - 중도 해지시에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율을 적용받게 되는 데 유의하여야 함

### [ 양도성예금증서 ] (CD :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양도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합니다. 통상 1,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운용하는 데 적합한 단기상품입니다. 은행에서 발행된 증서를 직접 살 수 있고 증권회사에서 유통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살 수도 있습니다.

- ▣ **상품특징** : 무기명 양도가능, 할인식 발행, 확정금리 발행
  - ◆ **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 ◆ **발행대상** : 제한 없음

- ◆ 예치기간 : 30일 이상 제한없음 (90일이 일반적임)
- ◆ 예치한도 : 제한이 없으나 500만원 이상이 일반적임
- ◆ 수익률 : 실세금리 연동형 금리

기 간	30일	60일	90일	180일
금리(연 %)	1.4~2.3	1.7~2.9	1.8~3.0	2.1~3.2

\* 2011. 12월 현재

- ◆ 이자계산 : 할인식
  - \*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액면금액에서 차감(할인)하여 발행한 후 만기지급시 증서 소지인 에게 액면금액을 지급
- ◆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 참고사항
  -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전에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통시장(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에서 매각할 수 있음
  -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CD의 특성상 만기후에는 별도의 이자없이 액면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데 유의하여야 함

**[ 환매조건부채권 ] (RP : Re-purchase Paper)**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금리연동형 확정금리상품으로서 단기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저축수단입니다.

▣ **상품특징** : 실세금리 연동형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우체국
- ◆ **대상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 ◆ **약정기간** : 제한 없음
- ◆ **최소거래금액** : 제한이 없으나 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임
- ◆ **수익률** :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기 간	30일	60일	90일	180일
금리(연 %)	1.9~3.4	2.2~3.6	2.3~3.9	2.6~3.9

\* 2011. 12월 현재

- ◆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 **참고사항**
  -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채, 지방채 등 우량 채권에 투자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임
  - 대부분 만기가 지난 후에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주로 통장거래로 이루어지며 중도 환매시에는 당초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됨

**[ 기업어음 ] (CP : Commercial Paper)**

기업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단기어음을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가 할인 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단기상품입니다. 1억 원 이상의 거액자금을 1개월 이상 3개월미만의 단위로 운용하기에 유리하며 자금의 반복예치를 통한 장기운용에도 적합한 금융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실세금리 연동형, 선이자 지급, 배서양도 가능

◆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 **투자금액** : 제한 없음(보통 1,000만원 이상)

◆ **예치기간** : 1년이내 (91일이 일반적임)

◆ **수익률** :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 **이자계산** : 할인매출 또는 만기에 원리금 지급

◆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원칙적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지만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중개회사(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할 수 있음(그러나 이 경우도 보통 10억원 이상의 거래만 취급)

[ **발행어음** ]

종합금융회사나 증권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유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금융상품입니다. 자기발행어음 또는 자발어음이라고도 합니다.

▣ **상품특징** : 실세금리 연동형, 선이자 지급

◆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 **가입한도** : 제한 없음 (보통 최저 거래금액이 100만원~500만원 이상)

◆ **예치기간** : 1년 이내(보통 90일)

◆ **수익률** :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기 간	30일	60일	90일	180일
금리(연 %)	3.0~3.5	3.1~3.6	3.2~3.9	3.2~4.2

\* 2011. 12월 현재 종합금융회사 기준

- ◆ **이자계산** : 할인매출 또는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 **참고사항**
  -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어음인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예치기간이나 금액에 적합한 상품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일정 수준의 중도해지비용이 적용됨
  - 기업어음(CP)에 비해서 수익률은 다소 낮으나 기업어음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임

**[ 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다시 여러 장으로 쪼개거나 한데 묶어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표적인 단기상품중 하나로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입니다.

- ▣ **상품특징** : 금융기관 발행어음, 실세금리 연동형, 선이자 지급, 중도해지 불가
  - ◆ **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 **거래금액** : 제한 없음(보통 500만원 이상)
  - ◆ **저축기간** : 원어음의 최장만기일 범위내

◆ 수익률 :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금리(연 %)	예금은행	1.3~2.3	1.5~2.8	1.7~2.9	2.0~3.1
	상호저축은행*	3.0	3.1	3.1	3.8

\* 2011. 12월 현재 H 저축은행 기준

◆ 이자계산 : 할인식(이자 선지급식)

◆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 참고사항

-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전성이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일정금액(1억원 정도) 이상이면 우대금리를 적용함
- 만기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나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하며 할인대출의 특성상 만기후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하는 데 유의하여야 함

[ 어음관리계좌 ]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허용되면서도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품특징 : 수시 입출금 가능, 실적배당

◆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 가입대상·예탁금액 : 제한 없음

◆ 예탁기간 : 1년 이내

◆ 수익률 : 실적배당

기 간	30일	60일	90일	180일
금리(연 %)	2.3~3.3	2.3~3.4	2.3~3.5	2.4~3.7

\* 2011. 12월 현재

◆ 이자계산 : 인출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

◆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증권회사의 경우 비보호)

◆ 참고사항

-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 “어음관리계좌” 통장으로만 거래됨
- 만기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 재예탁되는 방식으로 예탁기간이 연장됨
-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및 자산운용회사의 단기 금융상품펀드(MMF)와의 경쟁상품임

[ 특정금전신탁 ]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됩니다. 즉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불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한 경우 특정금전신탁이라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에는 대표적으로 맞춤형 특정금전신탁과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 등이 있습니다.

## 〈 맞춤형 특정금전신탁 〉

투자자는 자신이 맡긴 돈의 운용대상, 운용방법 및 운용조건 등을 은행에 지시하고, 은행은 고객이 지시한 내용대로 운용하고 운용수익에서 일정한 비용(신탁보수 등)을 차감후 실적배당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기대수익률 등에 따라 맞춤형 투자 가능

◆ **취급기관**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종 류** : 채권형, 주식형, Wrap Account\*형

\* 랩어카운트(Wrap Account) : 고객이 위탁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자산 등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

◆ **예탁한도** : 5,000만원 이상(취급기관에 따라 다름)

◆ **예탁기간** : 제한 없음(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 **수 익 률** : 실적배당

◆ **수익계산** : 만기 일시지급식 또는 이자지급식 등

◆ **중도해지** : 가능(단, 운용자산의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특정금전신탁에 발생한 수익은 고객이 직접 유가증권 등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하여 과세함. 즉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유가증권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운용자산의 안전성(신용도)을 감안하여 가입하여야 함.

## 〈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 상품중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 상품특징

-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운용하므로 안전한 투자 가능
- 예치기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 가능
- ◆ **취급기관**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종 류** : 국공채형, 회사채형
- ◆ **예탁한도** : 1억원 이상(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함)
- ◆ **예탁기간** : 제한 없음(일반적으로 1년 이상)
- ◆ **수 익 률** : 실적배당
- ◆ **수익계산** : 만기일시 지급식, 이자지급식 등
- ◆ **중도해지** : 가능(단, 운용자산의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분리과세(33.0%) 선택 가능
-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 **참고사항**
  -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였더라도 투자자는 분리과세 또는 일반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분리과세의 신청은 연간 금융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33% 세율로 납세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4. 주택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 [ 청약저축 ]

월부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적금 형태의 저축입니다.

▣ **상품특징** :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 부여, 적립식 저축

◆ **취급기관** :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농협 등에서 취급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1세대 1계좌) 단, 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

\* 주택 청약저축·예금·부금 중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능

◆ **계약기간** : 국민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 **월부금** : 2~10만원 범위내 (5,000원 단위)

◆ **금 리**

기 간	1개월 이내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금리(연 %)	무이자	2.5	3.5	4.5

\* 2011. 12월 현재

◆ **청약순위**

- 1순위 : 가입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매월 저축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가입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저축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한 자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소득공제(당해연도 납입액의 40% 범위내)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 **참고사항**

-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
- 소득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로서 가입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연간 납입금액의 40% 한도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주택청약예금 ]**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 또는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우선권 부여

◆ **취급기관** : 은행(산업·수출입은행 제외)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인 자 : 주택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국내에 주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만 20세 미만인 자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 청약저축·예금·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능

◆ 계약기간 : 1년(1년 경과시 자동 재예치)

◆ 청약대상 주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대상주택규모 (전용면적기준)	예치금액 (만원)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및 군
85㎡이하 <sup>1)</sup>	300	250	200
102㎡이하 <sup>2)</sup>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주: 1) 85㎡이하 가입자는 60㎡초과 85㎡이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도 청약 가능함  
2) 전용면적 102㎡ 이하 가입자는 85㎡ 이하도 신청이 가능함

◆ 금 리 : 연 3.1~3.6%(2011. 12월 현재)

◆ 이자계산 : 매월 이자지급식 또는 만기 이자지급식

◆ 청약 우선순위

- 1순위 :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예치후 2년이 경과된 자
- 2순위 :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예치후 6개월이 경과된 자

◆ 세금우대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참고사항

- 예치금액 변경시 큰 면적의 주택으로 변경하면 1년 후에 청약할 수 있으며, 작은 면적으로 변경시 모집공고일 이전에 신청하면 즉시 청약 가능함

### [ 주택청약부금 ]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 규모에 맞추어 매달 저축하면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60㎡ 초과~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입니다.

▣ **상품특징**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우선권 부여

◆ **취급기관** : 은행(산업·수출입은행 제외)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인 자 : 주택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국내에 주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만 20세 미만인 자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계약기간** : 3~5년(각 은행별 상이)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또는 정액적립식(각 은행별 상이)

◆ **금 리** : 연 3.1~4.2%(3년만기, 2011. 12월 현재)

◆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단위: 만원)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및 군
300	250	200

◆ **청약 우선순위**

- 1순위 : 납입인정금액이 청약가능 납입금액 이상이고 2년이 경과된 자
- 2순위 : 납입인정금액이 청약가능 납입금액 이상이고 6개월이 경과된 자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참고사항**

- 민영주택자금 대출 및 분양 당첨후에는 입주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함
-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는 청약예금으로 변경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5월부터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주택 소유나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우는 금융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공공·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

◆ **취급기관** :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농협 등에서 취급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계좌 가입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계약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주택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 **금 리**

기 간	1개월 이내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금리(연 %)	무이자	2.5	3.5	4.5

\* 2011. 12월 현재

◆ **청약대상 주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대상주택규모 (전용면적기준)	예치금액 (만원)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및 군
85㎡이하 <sup>1)</sup>	300	250	200
102㎡이하 <sup>2)</sup>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주: 1) 해당 전용면적 뿐만 아니라 60㎡초과 85㎡이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도 청약 가능함  
2) 해당 전용면적 뿐만 아니라 102㎡ 이하 가입자는 85㎡ 이하도 신청이 가능함

◆ **청약 우선순위**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후 2년이 경과된 자
- 2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된 자

◆ **세금우대**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예금보호 여부** : 국민주택기금에서 별도 관리

◆ **참고사항**

- 소득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인 세대주로서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48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 예·부금과 비교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	대상지역	전국		시·군 지역	
	가입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방법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예치식 병행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저축금액	월2~50만원	월2~10만원	200~1,500만원	월5~50만원
청약방법	대상주택	모든 아파트	전용면적85㎡이하 공공아파트 등	모든 민영아파트	전용면적85㎡이하 민영아파트
	1순위	가입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단, 민영아파트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가입 후 2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후 2년 경과 (매월 약정일 납입 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
	주택규모 선택	최초 청약시	통장 가입시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자유적립식 장기금융상품으로 일정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우대 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가입대상 제한, 장기주택자금 대출 수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취급기관** : 전 금융기관

◆ **가입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②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계약기간** : 7년 이상(취급기관별로 상이)

◆ **적립방법** :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적립 가능

◆ **금 리** : 연 3.2~4.3%(7년만기 이율, 2011. 12월 현재)

◆ **주택자금 대출**

- 자금용도 : 주택구입자금, 신축자금

- 대출금액 : 저축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최고 2배 이내

- 대출기간 : 저축기간에 따라 20년 이상 33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자격 : 가입후 만 5년 이상 경과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자

\* 세부기준은 취급기관별 상이

◆ **세금혜택** :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2012년말까지 가입자에 한함)

◆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내(최고 300만원), 2009년말 이전 가입자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2012년 까지 소득공제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 **참고사항**

-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유리한 상품이며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실효수익률도 높은 편임
-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자가 가입후 1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저축액의 8% (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의 금액을 추징함. 다만, 소득공제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지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함
- 금융기관에 따라 (신)비과세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 장기주택마련펀드 ]**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과세혜택, 소득공제 혜택이 같은 펀드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비과세, 소득공제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 **가입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②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저축한도** :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최저가입금액을 두는 경우도 있음

◆ **저축방법** :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중에서 선택 가능

◆ **판매수수료** : 가입금액의 1~2% 내외

◆ **저축기간** : 1년 ~ 10년

◆ **신탁재산 운용** :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중에서 선택

- ◆ 수 익 률 : 실적배당
- ◆ 중도환매 : 환매 가능
- ◆ 세금혜택 :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2012년말까지 가입자에 한함)
- ◆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내(최고 300만원), 2009년말 이전 가입자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2012년 까지 소득공제
-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 참고사항
  -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가입좌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분산투자 가능
  - 당해 펀드의 가입일로부터 7년 이내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펀드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펀드를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추징(1년이내 해지시 펀드납입금액의 8%(60만원 한도), 5년이내 해지시 펀드납입금액의 4%(30만원 한도))

### [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 이상 계약유지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과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 저축기능과 보장기능을 겸비한 보험상품입니다.

- ◆ 취급기관 :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 ◆ 가입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②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 보험기간 : 7년, 10년, 15년, 20년
- ◆ 납입기간 : 전기납

-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자유납
- ◆ **납입보험료 한도** : 월 100만원 이내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분기별 300만원 한도)
- ◆ **이 율** : 보험회사가 정하는 공시이율 또는 약관대출이율(2%를 최저이율\*로 함) \*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음
-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 전액  
\* 순보험료(납입보험료-위험보험료-사업비)에 일정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원리금 합계
- ◆ **세금혜택** :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2012년 말까지 가입분에 한함)
- ◆ **소득공제** : 납입한 저축보험료의 40%(연 300만원이내), 단 2009년말 이전 가입자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2012년까지 소득공제
- ◆ **해지가산세**
  - 7년 미만 해지시 : 이자소득세
  - 5년 미만 중도해지시 불입금액의 4% 추징세(연 30만원한도)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손해보험)

구분	지급사유(예시)	지급금액(예시)
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80% 한도
상해의료비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분(180일한도)	가입금액한도
임시생활비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시(180일한도)	약정된 일당액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만기생존시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생존시	적립 책임준비금

(생명보험)

구분	지급사유(예시)	지급금액(예시)
만기보험금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생존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
사망보험금	사망 또는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인 장애 발생시	500만원 +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

\*보장내역과 지급금액은 보험회사의 상품별로 차이가 있음

**[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자 등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등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 〉			
구분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자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3천 만 원(2011.3.31일 이후부터 결혼 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2011.3.31일 이후 부터 결혼 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3천 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 하고자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자	4천만원~10천만원(만 20세 미만 3자녀 세대는 5천만원~11천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대상주택	전용면적 85m <sup>2</sup> 이하인 주택(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한도	1억 원 이내(구입자금은 매매(분양)가격의 100%범위내,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70% 범위내) 단,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1억 5천만원 이내	최고 8천만원 이내 (전세금액의 70%이내) 단, 주민등록표상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최고 10천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대출금리 (2010. 12월 현재)	연 5.2% (단, 다자녀가구 1.0%, 다문화·장애인가구 0.5% 우대 가능)	연 4.0%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세대 0.5% 인하 적용)	연 2.0%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기간	20년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최장 6년내에서 2회 연장 가능)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금의 50%이내 만기 상환)
신청기간 (지원기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 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소득공제한도	대출금의 이자상환에 대해 1천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 (단 대출기간은 15년 이상)	-	-

##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모기지론)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최장 30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 ▣ **상품특징** : 주택구입을 위한 장기 금융상품, 고정금리 소득공제 혜택
  - ◆ **신청대상** : 만 20세 이상으로 무주택자, 주택 취득 15년 이내인 자(단,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 **대출한도** : 최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5억원(최소 대출 금액 : 1백만원)
  -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의 기간에서 선택 가능(만 70세 이상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15년만 선택 가능)
  -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인 주택
  - ◆ **대출금리** : 고정금리(대출만기 기준으로 4.8·5.05%, 연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기본형 고정금리에서 소득수준별 할인 적용)
  -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3년 거치기간 선택 가능, 최대일시 상환금액은 만기에 따라 달리 적용)
  - ◆ **중도상환 수수료** : 1년 이내 상환시 2%, 3년 이내 상환시 1.5%, 5년 이내 상환시 1% 부과, 5년 이후 면제
  - ◆ **소득공제** : 만기 15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대해 연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상환기간은 30년 이상은 연 1천5백만원), 2012년부터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연 1천5백만원까지 소득공제(여타 대출은 연 5백만원)
  - ◆ **취급기관** : 은행, 보험회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http://www.hf.go.kr)) 참조

## 5.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 [ 연금저축 ]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2001. 2월부터 신규 도입된 상품으로 취급기관별로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연금보험, 연금공제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시 소득공제분과 연금이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개인연금저축 : 1994.6월부터 2000.12.31일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며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으나 기존계약은 연금저축과 별도로 만기시까지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도 계속 유지됩니다.

▣ **상품특징** : 노후대비 장기 금융상품, 세금우대, 소득공제 혜택

◆ **취급기관** :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보험회사·우체국, 자산운용회사, 농·수협중앙회·회원조합 및 신탁중앙회, 증권투자회사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 **저축한도** : 분기별 300만원까지

\* 종전 개인연금저축을 포함해서 분기별 총 600만원까지 저축 가능

◆ **저축(납입)기간** : 적립기간 +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 : 10년 이상 1년 단위로 수익자가 만 55세가 넘을 때까지

-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상 1년 단위로 정함

◆ **수익률** :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또는 확정형

\* 2011. 12월 현재 예금은행의 개인연금신탁(비과세) 배당률 : 연 3.38% 내외

◆ 연금 수령주기 및 지급방식

- 수령주기 : 월단위(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도 수령 가능)
- 지급방식 : 정액식 지급(수익자 요청시 체증식 가능)

◆ 세금혜택 : 세무우대(연금수령시 소득공제분과 이자에 대해 5.5% 원천징수) 및 소득공제(연간 적립액의 100%, 퇴직연금포함 400만원까지)

\*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비과세 및 소득공제(연간 적립액의 40%, 최고 72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포함해 472만원까지 소득 공제 가능

◆ 중도해지

- 연금저축 가입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금액(연간 300만원<2011년부터는 400만원> 초과 납입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0%(지방소득세 포함) 부과(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에는 연금소득세만 부과)
- 연금저축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연간 납입금액(300만원 <2011년부터는 4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0%를 해지가산세로 징수(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제외)

◆ 예금보호 여부 : 금융기관별로 상이(〈참고 1〉 참조)

◆ 참고사항

- 연금저축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수익률, 연금지급방식, 부대서비스 등 제반 계약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취급기관별 주요 특징은 〈참고 1〉 참조)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상품에 추가로 납입할 것인지 연금저축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소득수준 및 가입금액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간의 세부비교는 〈참고 2〉 참조)

\* 개인연금저축에는 연간 180만원까지 그리고 연금저축에는 400만원까지 납입하면 비과세, 세무우대 및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연간 58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

- 2001. 3월부터 기존의 세제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금융기관간(동종, 이종 모두 가능)에 개인연금을 이전할 수 있게 되었음(세부사항은 <참고 3> 참조)
- 가입자는 만기전에는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참고1> 연금저축 취급기관별 주요 상품특징 비교

구분	신탁형		보험형	
	은행 (수협중앙회 포함)	자산운용회사	생명보험회사·우체국· 생명공제(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신탁중앙회)	손해보험회
납입방식	- 자유적립식	- 자유적립식	- 정액식	- 정액식
연금 지급방식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 종신연금형	- 확정기간형
상품형태	- 채권형 - 주식형 (주식 10%이내)	- 국공채형, 채권형 - 주식형 - 혼합형	- 고정금리형 - 금리연동형	- 고정금리형 - 금리연동형
수익률 및 원금 보장여부	- 실적배당 (원금보장)	- 실적배당 (수익률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	- 원리금 보장형	- 원리금 보장형
예금자 보호	- 5천만원까지 보호	- 보호대상이 아님	- 생명보험회사는 5천 만원까지 보호 - 우체국은 정부에서 지급보장 - 생명공제는 보호대상 이 아님	- 5천만원까지 보호
주요 특징	- 자유 적립식이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축적으로 납입 가능	- 좌동	- 원리금 보장형이므로 운용 수익률에 관계 없이 약정한 금리로 연금 수령	- 좌동
	-	-	- 추가 보험료로 다양한 보장성 특약 제공	- 좌동
	- 납입원금 보장	-	- 종신연금형의 경우 사망시까지 연금 보장	-

〈참고2〉 연금저축(세금우대)과 개인연금저축(비과세)의 비교

구 분		연금저축(세금우대)	개인연금저축(비과세)
가입대상		- 만18세 이상 국내거주자	- 만20세 이상 국내거주자
취급기관	신 탁	- 은행(수협중앙회 포함)	- 좌 동
	보 험	- 보험회사, 우체국	- 좌 동
	투자신탁	- 자산운용회사 (판매는 은행, 증권회사)	- 좌 동
	생명공제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농·수협 회원조합
	뮤추얼펀드	- 자산운용회사 (판매는 은행, 증권회사)	
계약기간	적립기간	- 10년 이상	- 좌 동
	연금지급 기간	- 적립기간 만료 후 만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 좌 동
가입한도		- 분기 300만원 이하	- 좌 동
소득공제 <sup>1)</sup> (적립기간중)	범 위	- 연간 저축금액의 100%	- 연간 저축금액의 40%
	한 도	- 400만원	- 72만원
소득세 (연금수령시)	적용세율 <sup>2)</sup>	- 연금소득세(5.5%) 원천징수	- 비과세
	과세표준액	- 이자 + 소득공제를 받은 적립 원금 누 계액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적용세율 <sup>2)</sup>	- 기타소득세(22.0%) 부과	- 이자소득세(15.4%) 부과
	과세표준액	- 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연400만원)+이자	- 이자
	5년이내 중도해지시 추가징수	-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2.0% 해지가산세 부과	- 소득공제분 추징 (납입금액의 4%, 연간 72천원 한도)
근 거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적용기준		- 2001. 2. 1일 이후 가입분 - 2005. 12월 이후 가입분부터 퇴직연금 입금액을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2011년 입금액 부터는 400만원)으로 한도 확대	- 2000. 12월말까지 가입분 (2001년부터 판매중지)

1)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는 연 240만원에서 2005. 12월 이후 퇴직연금 포함 연 300만원으로, 2011년 입금액부터는 연 400만원으로 확대

2) 지방소득세 등 포함

〈참고3〉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저축의 금융기관간 이전

- ◆ **주요내용** : 특정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포함)을 소득공제, 비과세 등 세 제혜택은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음
- ◆ **도입취지** :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최소 15년 이상 30~50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반면, 취급기관별로 위험보장여부, 운용수익률,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등이 달라 가입자의 연령이 경과하거나 경제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종래에는 해지로 처리됨으로써 소득공제액 추징 및 이자소득세 납부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2001년 3월부터는 이러한 불이익 없이 연금저축을 다른 취급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음

◆ **계약이전의 범위**

	현재 가입상품	이전가능상품
연금저축	연금신탁(시가평가) 연금보험	연금신탁(시가평가)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신탁(장부가) 신개인연금신탁(시가평가) 개인연금보험	신개인연금신탁(시가평가) 개인연금보험

◆ **이전 금액**

- 신탁 : 평가금액 - 해지(환매)수수료 - 계약이전수수료
- 보험 : 해약환급금 - 계약이전수수료

◆ **계약이전의 제한**

-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간 상호이전 불가
  - : 소득공제한도, 소득세부과기준 등이 서로 다르므로 이전 불가
- 시가평가상품을 장부가상품으로 전환불가
  - : 장부가평가상품은 시가평가상품으로 전환 가능
- 계약이전후 계좌통합금지
  - : 이전받은 계좌와 이전받은 금융기관에 기개설되어 있는 계좌와 통합금지
- 계좌의 분할이전금지 : 계좌를 분할하여 이전하거나 계좌의 일부이전 금지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계좌의 이전 금지
  - : 수익권담보대출이 있는 계좌는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계약 이전 허용(대출금 상계금지)

##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란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이러한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상품특징 : 노후생활 자금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

- ◆ **대 상** : 부부가 모두 만60세 이상인 고령자(1세대 1주택)
-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인 주택
- ◆ **지급금액** : 주택가격과 가입시점에 따라 다르며 가입시점은 부부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함
- ◆ **지급방식** : 종신지급과 종신흡합중 선택 종신지급 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방식이며, 종신흡합 방식은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 ◆ **대출금리** : 3개월 CD금리 + 1.1%
- ◆ **취급기관**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광주, 부산, 전북은행, 농협
- ◆ **보증료** : 초기보증료로 주택가격의 2%를 최초 대출실행시 1회 납부하고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
- ◆ **대출금 상환** : 대출금 상환은 주택연금 계약종료시 담보주택 처분가격 범위내로 한정

상환시점	상환할 금액	비고
주택가격 > 대출잔액	대출잔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가격 < 대출잔액	주택가격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세제혜택**

-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
- 주택연금 이용중 재산세 25% 감면(단,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원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참조

## 6.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 [ 장학적금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저축심을 고취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들의 학자금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금식 금융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확정금리 지급, 일반 정기적금과 유사

- ◆ **취급기관** :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지역농·축협, 지구별수협 및 지역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 ◆ **가입대상** :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 **예치기간** : 6개월 이상 보통 3년 이내
- ◆ **가입방법** : 학교를 통한 단체가입 및 개별 가입(주민등록번호 확인)
- ◆ **가입한도** : 금융기관별로 상이
- ◆ **저축방법** : 월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 ◆ **금 리** : 자유화

기간	2년	3년
금리(연 %)	2.8~3.2	3.0~3.6

\*2011. 12월 현재 예금은행 기준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비과세중 선택 가능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 ◆ **참고사항**
  -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 가능(단, 2006년부터 미성년자는 세금우대 가입대상에서 제외)
  - 2000. 12. 31 이전 가입 계좌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0.0%만 납부

## [ 교육보험 ]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연령에 따라 생일축하금, 학자금, 국토순례자금, 배낭여행자금, 자립자금 등 소정의 교육자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계약하는 일종의 생존보험 상품입니다. 예기치 못한 부모의 경제능력 상실(사망 등)시에도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및 자립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 ◆ **보험기간** : 가입자녀가 일정연령(통상 만24~27세)에 달할 때까지(회사별로 상이)
-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 5·7·10년납, 12·15·18세납 등
- ◆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 연납, 6개월납, 3개월납, 월납 등
- ◆ **가입연령** : 통상 주피보험자(부모) 15세~60세, 종피보험자(가입자녀) 0세~20세
- ◆ **가입한도** : 보험회사별로 계약·납입방법, 특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 ◆ **보험금 지급내용**
  - 주피보험자(부모) 및 종피보험자(가입자녀)의 생존 또는 장해 발생 여부, 특약내용 등에 따라 상이
  - \* 예시 : 생일축하금(1~4세), 학자금(5~23세), 국토순례자금(15세), 배낭여행자금(19세), 자립자금(27세) 등 지급
- ◆ **세금혜택**
  - 비과세(10년 이상 경과시)
  - 단, 2003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하여는 7년 이상 경과시 비과세
  - 소득공제(보장성보험 해당 보험료 1인당 합계액 연 100만원)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 ◆ **참고사항**
  - 부모사망시 지급되는 유자녀 학자금은 대부분 부모 생존시 지급되는 생존학자금의 2배 이상 지급하고 있음
  - 보장내용 및 학자금 지급액은 회사별·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상품의 약관내용 참조

## 7. 증권투자관련 금융상품

### [ 증권저축 ]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액 이상의 저축금을 납입한 후 저축자 자신이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함으로써 소기의 저축목적을 달성하는 저축, 즉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유가증권(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

- ◆ **취급기관** : 증권회사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투자단위** : 제한 없음
- ◆ **투자기간** : 제한 없음
- ◆ **투자대상** : 국채, 공채, 금융채, 회사채, 주식 등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단,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않은 예탁금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
- ◆ **참고사항**
  - 투자하는 회사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원금에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유가증권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 [ 금융채 ]

한국산업은행(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금융채권), 일반은행(○○은행채권) 등의 금융기관이 안정적인 자원 조달을 위해 각각의 근거법을 기초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입니다.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므로 비교적 안전하며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할인채, 복리채, 이표채로 분류됩니다.

▣ **상품특징** : 금융기관발행 채권, 다양한 이자지급방식, 세금우대 가능

◆ **취급기관** : 은행, 증권회사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투자단위** : 10만원 단위(복리채의 경우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제한 없음

◆ **투자기간** : 1년, 2년, 3년, 5년

◆ **이자계산** : 채권종류에 따라 다름

- 할인채 : 할인 발행후 만기에 채권의 액면금액 지급

- 복리채 : 만기에 원리금 일시 지급(3개월마다 복리로 계산)

- 이표채 : 일정기간(1개월/3개월)마다 이자 지급, 만기에 원금 지급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원칙적으로 중도 환매되지 않으며 만기이전에는 증권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음

-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2003년 말까지 발행한 채권은 5년 이상)인 채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33.0%)를 신청할 수 있음

## [ 후순위채 ]

후순위채는 채권의 발행자가 파산하는 경우 주주보다는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보다는 상환순위가 뒤지는 채권입니다. 즉, 후순위채권의 발행자가 파산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상환순위가 늦어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채권발행자의 신용도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상품특징** : 고수익·고위험채권, 다양한 이자지급방식, 분리과세 가능

◆ **취급기관** : 은행, 증권회사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투자단위** : 보통 1,0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 **투자기간** : 5년 이상(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발행시마다 다름)

◆ **이자계산**

- 할인채 : 할인 발행후 만기에 채권의 액면금액 지급

- 복리채 :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

- 이표채 : 일정기간(1개월/3개월)마다 이자 지급, 만기에 원금 지급

◆ **세금혜택** : 일반과세, 분리과세중 선택 가능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중도해지 및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나 양·수도 절차를 통해서 양도는 가능하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도할 수 있음

-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33.0%)를 신청할 수 있음

**[ 수익증권 ]**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 또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할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문투자기관인 자산운용회사가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운용실적대로 배당하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간접투자상품, 계약형투자신탁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 **투자금액** : 펀드별로 정함

◆ **투자기간** : 펀드별로 정함

◆ **환매수수료** : 펀드별로 정함(환매수수료란 펀드 판매시에 정한 최소 투자기간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위약금임)

◆ **환매대금 지급일**

상품종류	환매대금 지급일	적용기준 가격	비고
MMF*	익일	익일	외국상품은 환매대금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며, 운용중인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거나 일부금액만 환매할 수 있음
채권형	제3영업일	제3영업일	
주식형	제4영업일	제2영업일	
혼합형	제4영업일	제3영업일	

\* 환매청구 시간이 17:00 이후일 경우에는 환매대금 지급일 및 기준가격 적용일이 하루씩 늦추어짐

◆ **수익률** : 실적배당(원금손실 발생 가능)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상품분류**

###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

- 증권펀드 : 투자자산의 50% 이상을 증권(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포함)에 투자하는 상품
- 부동산펀드 : 투자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상품
- 단기금융상품펀드 : 투자자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CD, 단기대출 등)에 투자하는 상품
- 혼합자산펀드 : 투자대상자산(증권, 부동산, 특별자산)과 투자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상품
- 특별자산펀드 : 투자자산의 50% 이상을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

### 〈유가증권(주식)의 투자비율에 따른 분류〉

- 채권형 : 운용대상에 주식이 편입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금리선물 포함)으로 운용하는 상품
- 주식형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주가지수선물·옵션 포함)에 운용하는 상품
- 주식혼합형 :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주가지수선물·옵션 포함)에 운용하는 상품
- 채권혼합형 : 자산총액의 50% 미만을 주식(주가지수선물·옵션 포함)에 운용하는 상품

### ◆ 참고사항

-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에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 및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실적

과 투자전략, 투자설명서 등을 점검한 후 자신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및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여야 하며, 가입 후에도 펀드의 운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적립식펀드 ]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목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원하는 펀드(주식형, 채권형 등) 한 가지를 선택하여 투자(적립)하는 상품입니다. 즉, 은행의 정기적금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적립하고 만기에 목돈을 찾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주가가 떨어져 싸다고 생각되면 주식을 많이 사고, 주가가 올라 비싸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적게 사게 되어 평균매입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일시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상품특징** : 적금형 투자상품, 분산투자로 위험감소 및 수익증대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 **가입대상** :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세제혜택 적용 펀드는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음

◆ **저축한도** :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최저가입금액을 두는 경우도 있음

◆ **저축방법** :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중에서 선택가능

◆ **판매수수료** : 가입금액의 1~2% 내외(펀드별로 다르며 투자설명서에 기재됨)

◆ **저축기간** : 1년 ~ 10년

◆ **신탁재산 운용** :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중에서 선택

◆ **수익률** : 실적배당

◆ **중도환매** : 환매 가능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적립식펀드의 장점**

- 목돈을 한번에 투자하지 않고 정기적금처럼 분산투자해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적은 주식을 사게 되므로 주식의 평균매입단가를 낮춰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음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장기투자하는 것이 금리 및 주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위험을 줄이는 투자방법이며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 및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 실적과 투자전략, 투자설명서 등을 점검한 후 자신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및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기에게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여야 함. 또한 가입후에도 펀드의 운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산 장기투자한다고 항상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며,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중도환매나 전액환매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해외펀드

해외펀드는 일반적인 국내펀드와 취급기관, 가입대상, 가입한도 등이 동일하지만 투자대상이 해외의 주식, 채권 및 부동산인 펀드상품입니다. 해외펀드 또한 국내펀드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산의 비율에 따라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자산총액의 50% 이상, 60% 미만을 해외주식에 운용하는 주식혼합형, 자산총액의 50% 미만을 해외주식에 운용하는 채권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원화로 투자되는 역내펀드(on-shore fund)와 해외투자운용회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로 나눌 수 있으며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지역(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에 따라 브릭스(BRICs) 펀드, 차이나 펀드, 태평양 펀드, 이머징마켓 펀드 등 매우 다양한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펀드는 개별상품별로 다양한 투자자산 운용비율, 투자방법, 투자자산운용지역 등이 세분화되어있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해외펀드를 찾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펀드는 장기투자를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에 투자할 때에 비해 아무래도 정보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펀드는 해외시장에서 투자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국내펀드와 비교해 볼 때 환매기간, 세금 및 수수료, 환위험 노출 등의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 1.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펀드는 해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환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한 예로 어떤 펀드는 외국통화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났는데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했을 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선물환거래를 이용할 수도 있는 데 역내펀드는 펀드 내에서 환헤지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고, 역외펀드는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회피 장치를 마련해야 하므로 해당 전문가와 상담시 환위험 회피 방법을 문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역외펀드 투자자가 환위험을 회피하는 경우 환위험 회피비용은 투자원금의 0.5% 정도가 일반적이며 투자원금에 대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 2. 환매기간 고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에 비해 환매기간이 긴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펀드는 환매신청 후 3~4일 내외로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펀드는 8~10일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외펀드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 3. 세금 및 수수료 고려

일반적으로 해외펀드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국내펀드보다 비싸게 책정됩니다. 이 또한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만 합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환매했을 때 부과하는 중도환매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국내펀드는 90일, 해외펀드는 180일 정도로 해외펀드가 국내펀드보다 길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 차익을 제외한 배당금, 이자만을 대상으로 과표 산정)하고 있으나, 해외펀드의 경우 15.4%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역내 해외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며 2009년 말까지 발생한 해외 주식 매매·평가손실은 2012년 초부터 말까지 발생하는 과세대상 이익에서 상계가 허용됩니다.

## [ 엠브렐러펀드 ]

투자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펀드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펀드로서 하나의 약관 아래 여러개의 하위(sub)펀드가 있는 모양이 마치 우산같다고 해서 엠브렐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위(sub)펀드로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수익증권, 안정형수익증권, 성장형수익증권, 정보통신펀드, 코스닥전용펀드, 공모주전용펀드 등 다양하게 편입할 수 있습니다.

▣ **상품특징** : 장세변화에 탄력적 운용 가능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저축한도 :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최저가입금액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 ◆ 판매수수료 : 가입금액의 1~2% 내외
- ◆ 저축기간 : 제한없음(추가형)
- ◆ 신탁재산 운용 : 각 하위(sub)펀드의 운용기준에 따라 운용
- ◆ 수익률 : 실적배당
- ◆ 중도환매 : 환매 가능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 참고사항
  -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와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전환시점을 잘 포착하여야 함

### [ 랩어카운트 ]

랩어카운트(wrap account)는 “포장하다” 라는 뜻의 “wrap” 과 “계좌” 를 의미하는 “account” 가 결합된 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 중에서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골라 하나의 계좌를 통해 전문가가 운용해주는 종합 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도입 이후 고객의 성향에 따라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증권사가 도맡아 구성하고 운용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활성화되면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상품특징 : 투자자의 성향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
  - ◆ 취급기관 : 증권회사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종류

- 일임형 랩어카운트 :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운용까지 모두 증권사가 대행
- 자문형 랩어카운트 : 증권사는 투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만 하고 실제 주문은 투자자가 직접 함
- 펀드형 랩어카운트 : 고객의 성향 등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최우수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전략을 제안

◆ 저축한도 :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최저가입금액은 10만원임

◆ 판매수수료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저축기간 : 제한없음

◆ 투자자산 운용 : 투자자의 성향에 맞추어 상의 후 운용

◆ 수익률 : 실적배당(원금손실 가능)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서비스의 대가로 연간 1~3%의 수수료를 내며 수시입출금이 가능

랩어카운트와 펀드의 차이점 비교

	랩어카운트	펀드
판매수수료	없음(단, 서비스 수수료 부담)	있음(펀드에 따라 다름)
환매수수료	없음	있음(규약에 따라 다름)
운용방식	개별 계좌로 운용	펀드매니저가 통합 운용
맞춤형 투자	투자자 성향에 따라 조절 가능	투자자 의견 반영 어려움
단일종목투자한도	제한없음	10%이내
목표수익률	절대수익 추종	벤치마크 추종
투자내용 확인	실시간, 온라인으로 가능	별도 요구 필요

### [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 ] (ELD : Equity Linked Deposit)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은 원금을 안전한 자산에 운용하여 만기시 원금은 보장되고 장래에 발생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가지수(KOSPI 200지수, 일본 닛케이 225지수 등)의 움직임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이율이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결정

- ◆ **취급기관** : 은행
- ◆ **가입대상 및 저축한도** : 제한없음
- ◆ **저축기간** : 제한없음(보통 1년 이내)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 **참고사항**
  - 주가지수 전망에 따라서 주가지수 상승형, 하락형 또는 횡보형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구성이 가능함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무이자인 경우도 있음
  - 동일유형의 상품으로 증권회사의 ELS(주가지수연동증권)와 자산운용회사의 ELF(주가지수연계펀드)가 있음

### [ 주가지수연동증권 ] (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일반적으로 운용자산의 대부분은 국공채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전하고, 나머지 일부자산을 주가와 연동되는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초과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의 금융상품(유가증권)입니다. 주가지수연동증권은 주식시장에 직접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리스크 회피와 비용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상품특징** : 투자원금과 수익이 주가지수 또는 개별주가에 연계되어 결정

◆ **취급기관** : 증권회사

◆ **투자금액** : 제한없음

◆ **투자기간** : 제한없음(개별 ELS별로 정함)

◆ **중도매매(해지)** : 불가능(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

◆ **수익률** : 실적배당(주가지수에 따라 변동)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주가지수연동증권에 따라 수익구조가 다르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다수의 상품에 분산투자하여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함
- 예측 불가능한 주가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만기 또는 투자기간중의 주가지수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투자하여야 함

### [ 주가지수연동펀드 ] (ELF : Equity Linked Fund)

주가지수 연동증권과 마찬가지로 운용자산의 대부분은 국공채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전하고, 나머지 일부자산을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ELS Warrant(권리증서)를 편입해 펀드 수익률이 주가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입니다.

▣ **상품특징** : 투자원금과 수익이 주가지수 또는 개별주가에 연계 되어 결정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 ◆ 투자금액 : 제한없음
- ◆ 투자기간 : 제한없음(개별 펀드별로 정함)
- ◆ 중도환매 : 가능(원금손실 발생 가능)
- ◆ 수익률 : 실적배당(주가지수에 따라 변동)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 참고사항
  - 주가지수 연동예금이나 주가지수 연동증권의 투자시와 마찬가지로 가입하는 상품의 수익구조, 주가예측을 전제로 투자하여야 함
  - 해외 주가지수나 환율 등에 연동하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주가지수연동형 상품의 비교

구분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 (ELD)	주가지수연동증권 (ELS)	주가지수연동펀드 (ELF)
판매(발행)기관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상품성격	예금	유가증권	투자신탁펀드
만기수익	지수에 따라 사전에 제시한 수익 확정지급	지수에 따라 사전에 제시한 수익 확정지급	운용성과에 따라 실적배당
예금보호	보호	비보호 (발행사의 신용이 중요)	비보호 (실적배당 상품)
중도해지	가능 (원금손실가능)	불가능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	가능 (원금손실 가능)
장 점	은행이 제시한 수익 보장	증권사가 제시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	추가수익 발생 가능
단 점	추가수익 없음	추가수익 없음	제시수익 보장 없음

## [ 회사채펀드 ]

일반회사가 돈을 빌리고 그 증서로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고 하는데 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 상품은 우량 회사채와 CP에 60% 이상 투자해 안정성과 고수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특히 3년 이상 거치식으로 투자할 경우, 1인당 가입한도 5,000만원까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입니다.

▣ **상품특징** : 우량 회사채 및 CP에 투자하여 주식형 펀드와 같은 위험성을 낮추고 일정 고수익을 겨냥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 **투자금액** : 제한없음

◆ **투자기간** : 제한없음(개별 펀드별로 정함)

◆ **중도환매** : 가능

◆ **수익률** : 장기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신용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추가 수익도 가능

◆ **세금혜택** : 1인당 5,000만원 비과세(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거치식 투자를 계약한 거주자)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일반 채권 펀드에 비해 실질 수익률이 1% 이상 높음

## [ 배당주펀드 ]

배당주펀드는 일반 주식형 펀드와 비슷하지만 대형주보다는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배당을 많이 주는 중소형 종목을 주로 편입한 상품입니다. 주식형 펀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으로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대부분 기업가치가 뛰어난 우량주이기 때문에 배당수익은 물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차익보다는 연말 배당수익을 목표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펀드입니다.

▣ **상품특징** : 배당이 많은 중소형 종목에 투자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 **투자금액** : 제한없음

◆ **투자기간** : 제한없음(개별 펀드별로 정함)

◆ **중도환매** : 가능(원금손실 발생 가능)

◆ **수익률** : 실적배당(주가지수에 따라 변동)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배당주 펀드는 편입 종목의 주가가 예상 배당수익률 이상으로 상승하면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배당 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으로 주식형보다 안전하지만 주가 하락에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분산투자 필요

## [ 인덱스펀드 ]

인덱스펀드는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인덱스펀드 구성에 있어서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펀드가 추구하는 목표 인덱스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인덱스마다 구성종목과 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 인덱스를 무엇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상품특징** :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계하여 시장의 평균수익 실현을 목표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 **투자금액** : 제한없음

◆ **투자기간** : 제한없음(개별 펀드별로 정함)

◆ **중도환매** : 가능(원금손실 발생 가능)

◆ **수익률** : 실적배당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인덱스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화 실현, 증권매매에 따르는 비용 절감, 저렴한 운용비용, 투자자 스스로에 의한 운용 등의 장점이 있지만, 목표 인덱스보다 낮은 투자성과, 구성종목 교체의 곤란성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운용사의 능력을 잘 따져보아야 함

## [ 재간접펀드 ]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란 펀드자산을 다른 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재간접펀드에 가입하면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다양한 펀드에 동시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분산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다양한 투자전략의 효과가 있는 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다른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는 효과

###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 ◆ 투자금액 : 제한없음

### ◆ 투자기간 : 제한없음(개별 펀드별로 정함)

### ◆ 중도환매 : 가능(원금손실 발생 가능)

### ◆ 수익률 : 실적배당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 참고사항

- 재간접펀드는 펀드에서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비용부담이 일반 펀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므로 가입전 펀드투자목적, 펀드유형, 판매·운용보수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등의 확인이 필요

## [ 뮤추얼펀드(투자회사) ] (Mutual Fund)

뮤추얼펀드(투자회사)란 개인, 법인 등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모은 자본금을 전문가(자산운용회사)에게 맡겨 유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투자토록 한 뒤 그 운용성과를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형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로 설립되나 이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체가 없고 실제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은 자산운용 전문회사가 담당하며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다릅니다.

### □ 상품특징 : 간접투자상품, 회사형 투자신탁

####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 ◆ 투자금액 : 펀드별로 정함

#### ◆ 투자기간 : 펀드별로 정함

#### ◆ 환매수수료 : 펀드별로 정함(환매수수료란 펀드 판매시에 최소 투자기간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 위약금 형식의 비용)

#### ◆ 환매대금 지급일

상품종류	환매대금 지급일	적용기준 가격	비 고
MMF	익일	익일	외국상품은 환매대금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며, 운용중인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거나 일부금액만 환매할 수 있음
채권형	제3영업일	제3영업일	
주식형	제4영업일	제2영업일	
혼합형	제4영업일	제3영업일	

- ◆ 수익률 : 실적배당(원금손실 발생 가능)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 분 류 :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동일
- ◆ 참고사항
  -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 및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실적과 투자전략, 투자설명서 등을 점검한 후 자신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및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기에게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여야 하며 가입 후에도 펀드의 운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상장지수펀드 ] (ETF :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란 안정적인 수익률이 장점인 인덱스 펀드에 개별 주식의 높은 환금성이 더해진 펀드입니다. 특정한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운용되는 것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됩니다. 예를 들어, 철강업종 ETF라면 철강업종 지수의 구성종목에 연동하도록 종목을 보유하고 운용이 되며 따라서 철강업종 ETF를 매입한다는 것은 여러 철강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상품특징 :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증권사에 주식매매 계좌를 통해 매매
  - ◆ 취급기관 : 증권회사
  - ◆ 투자금액 : 제한없음
  - ◆ 투자기간 : 주식처럼 거래
  - ◆ 중도매매(해지) : 자유롭게 매매(단, 매도일로부터 3일째 자금 회수)
  - ◆ 수익률 : 실적에 따른 수익
  -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ETF 상품은 신문을 통하여 매일 가격 변동을 볼 수 있어 투자판단이 용이하며, 특정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의 위험을 분산투자에 의해 줄일 수 있음
- ETF 평균 수수료는 국내 일반 주식형 펀드는 물론 인덱스펀드에 비해 낮은 수준

[ 리츠 ]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이며 부동산투자회사로도 불립니다. 일반 투자자는 리츠 주식에 공모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 주식의 매매를 통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통한 세제상의 혜택은 물론 수익성, 안정성,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운용 및 리츠 청산에 따른 주주 수익 배당, 세제 혜택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리츠 자산관리 회사
- 판매회사 : 증권회사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투자금액 : 제한없음

◆ 투자기간 : 설립 리츠별 개별 설정

◆ 수익률 : 실적배당(원금손실 발생가능)

◆ 세금혜택

-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30% 감면

-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거의 없음
- 토지재산세가 0.2%의 단일세율로 적용 받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상품분류**

유형	투자대상	내용
자기관리 리츠	일반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영 등 전반적인 자산관리를 자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의 리츠
위탁관리 리츠	일반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영 등 전반적인 자산관리를 외부의 전문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형태의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 (CR-REITs)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기업의 재무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설립되고 자산관리는 외부의 전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형태의 리츠
개발전문 리츠	개발가능 부동산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자산의 투자·운영 등 전반적인 자산관리를 직접 또는 외부의 전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형태의 리츠

◆ **참고사항**

- 투자대상이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므로 물가가 상승해도 투자가치의 하락 위험이 적고, 최악의 경우 보유 부동산 처분으로 투자원금 손실 최소화
- 부동산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소액 투자자의 대형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 하는 상품임
-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리츠 운용회사의 과거 운용 실적과 투자전략, 투자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자신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및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함

## [ 헤지펀드 ] (Hedge Fund)

헤지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투자대상에 다양한 투자 전략을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 **상품특징** : 다양한 투자대상에 투자할 수 있고 차입과 공매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투자전략이 다양함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혼합자산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 **투자금액** : 제한없음 다만, 일반투자자인 개인은 5억원 이상

◆ **투자기간** : 제한없음(개별 펀드별로 정함)

◆ **중도환매** : 가능(일반펀드보다는 제한이 있음)

◆ **수익률** : 실적에 따른 수익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참고사항**

- 개인투자자의 경우 헤지펀드 가입에 제한이 있는 것은 헤지펀드 도입 초기인 점과 헤지펀드 투자전략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식이 있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가입을 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8. 보험관련 금융상품

### [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장래 노후생활 준비는 물론 장기 저축성 상품으로서도 큰 장점을 가진 상품입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시 다양한 지급방법을 통해 필요시점에 필요한 방법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 금리변화를 반영하는 공시이율로 부리·적립되는 저축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수령하는 금액 중에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도 부여되어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연금수령방법 다양, 다양한 선택부가특약으로 연금지급 개시전 보장기능 강화

◆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 **가입연령** : 15 ~ 72세(회사별·상품별 상이\*)

\* 보험계약 체결후 연금개시까지의 기간(제보험기간)중 사망보장이 없는 순수연금의 경우 0세부터 가입 가능

◆ **연금개시연령** : 45 ~ 80세 (회사별·상품별 상이)

◆ **연금지급방법** :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 종신형 : 연금지급개시후 사망때까지 매년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하면 연금보증기간(10년 또는 20년)동안 유족에게 대신 연금을 지급

- 확정형 : 연금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10·15·20년)동안 매년 연금을 지급 받는 방식이며,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중에 사망하면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 받음

- 상속형 :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원금으로 하여 연금지급개시 후 사망시까지 가입한 목돈의 이자를 매년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며,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지급받음

◆ 이 율 : 공시이율

\* 매월 1일 각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보험회사는 직전 6개월간 일반계정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 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적용주기는 1개월, 3개월, 1년 등 보험회사의 상품별로 상이)

◆ 보장내용 예시

구분		보장내용
거치형	재해사망	일시납보험료의 20% + 책임준비금
	일반사망(재해사망 이외의 사망)	일시납보험료의 10% + 책임준비금
적립형	재해사망	1,200만원 + 책임준비금
	일반사망(재해사망 이외의 사망)	600만원 + 책임준비금

\* 보장내역과 지급금액은 보험회사의 상품별로 차이가 있음

- ◆ 세금혜택 : 비과세(10년 이상 유지시, 단, 2003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하여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종신보험 ]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종신)이며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대표적인 보장성보험 상품입니다. 각 개인의 재무상황 및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각종 특약을 조립함으로써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확실히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며 고객의 개인별 수요 및 재정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뒤 보장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즉, 가입에 앞서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향후 본인의 필요자금(자녀교육비, 자녀결혼자금, 가족 생활비 등)과 준비자금(퇴직금, 적금, 연금)을 결정한 후 생활설계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나는 필요보장자금에 따라 가입금액, 보장금액과 지급범위 및 기간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 **종 류** : 종신형

\* 보험회사별로 계약·납입방법, 특약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 판매

◆ **보험기간** : 종신

◆ **납입기간** : 일시납, 5·10·15·20년납, 55·60·70세납 등 다양

◆ **가입연령** : 통상 15~65세

◆ **납입방법** :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 **보장내용 예시**

지급 사유	지급액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 하였 거나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전액
*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 특약으로 다양한 보장내용 추가 가능(정기특약, 입원특약, 암특약, 재해관련특약, 체감정기특약, 성인병특약 등)	

◆ **세금혜택** : 소득공제(보장성보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1인당 합계액 연 100만원)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참고사항**

-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우량채 계약자(비흡연자, 혈압·체격 등이 정상인 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10~30% 수준까지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음

- 사망보험금이 체증, 체감하도록 하는 상품도 있으며,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감액완납보험 및 연장정기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상품도 있음
- 2001. 7월부터 납입보험료중 일부(적립보험료 등)로 별도의 펀드를 구성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변액종신보험이 도입, 판매되고 있음

### [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실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무상황 및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각종 특약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고객의 개인별 수요 및 재정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뒤 보장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 ◆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 **보험기간** :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계약시 이를 명기
- ◆ **납입기간** : 일시납, 5·10·15·20년납, 55·60·65세납 등 다양
- ◆ **가입연령** : 제약은 없으나 연령대가 낮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
- ◆ **납입방법** :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 ◆ **보장내용 예시**

진단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병이 발병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수술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입원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기타	통원비, 건강회복자금 등을 계약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음

\* 개별보장내용은 보험회사의 상품별로 차이가 있음

◆ **세금혜택** : 소득공제(보장성보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1인당 합계액 연 100만원)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참고사항**

- 건강보험은 보험회사에 따라 보장하는 대상범위가 조금씩 다르므로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가 넓고 본인이 보장받고 싶은 질병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 건강보험에는 대부분 암관련 보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이미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음
- 일부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을 단기(3~5년)로 설정한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갱신형으로 운영되므로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

## [ 변액보험 ]

변액보험은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간접투자 상품으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장금액이 가입당시 정해져 있는 정액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투자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다른 금융권 간접투자 상품과 같이 보험료 중 투자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고객에게 실적 배당해 준다는 측면에서 은행권의 금전신탁이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 뮤추얼펀드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보험의 특성상 변액보험은 다른 간접투자상품과 달리 위험보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며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보장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완기능입니다. 변액보험은 보장기능에 따라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이 있으며, 보험료 자유 납입 및 중도인출의 특성을 결합한 변액유니버설보험이 2004년부터 도입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서는 변액연금보험을 기준으로 상품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의 일정 금액(기납입 보험료 등)을 최저보증하고 있습니다.

▣ **상품특징** :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이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른 자산운용 형태(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펀드 등) 선택

- ◆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 ◆ **가입연령** : 15 ~ 73세(보험상품별로 상이)
- ◆ **연금개시연령** : 45 ~ 75세(보험상품별로 상이)
- ◆ **연금지급방법** :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 ◆ **보험납입기간** : 일시납, 7, 10, 15, 20년납 등 다양
- ◆ **이 율** : 실적배당(통상 연금개시 이후에는 공시이율 적용)
- ◆ **보증내용 예시**

구 분		보증내용
거치형	재해사망	일시납보험료의 20% + 계약자적립금
	일반사망(재해사망 이외의 사망)	일시납보험료의 10% + 계약자적립금
적립형	재해사망	1,200만원 + 계약자적립금
	일반사망(재해사망 이외의 사망)	600만원 + 계약자적립금

\*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영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이며, 보증내역과 지급금액은 보험회사의 상품별로 차이가 있음

- ◆ **세금혜택** : 비과세(10년 이상 가입시, 단, 2003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하여 7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
-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은 장래 노후생활 준비는 물론 장기 저축성 상품으로서도 큰 장점을 가진 상품입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시 다양한 지급방법을 통해 필요시점에 필요한 방법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 금리변화를 반영하는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되어 일정한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저축기능도 가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노후복지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 **가입연령** : 청약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 ◆ **보험료납입기간** : 10년, 15년, 20년, 전기납
-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 ◆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종신\*  
\*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상품만 종신연금이 가능
- ◆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 ◆ **연금개시연령** : 만 55세 이후
- ◆ **적용금리** : 생명보험회사 (공시이율), 손해보험회사 (공시이율)
- ◆ **배 당** : 연금자산 운용수익률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음
- ◆ **소득공제** : 연간 400만원 한도(2005.12월 이후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포함)
- ◆ **해지가산세**
  - 5년이내 해지시 :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 2005. 12월 이후 300만원<2011.1월부터는 400만원 한도>)의 누계액의 2%의 해지가산세 부과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연금지급 개시전)**
  - 피보험자 연금개시전 사망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고 계약 소멸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연금지급 개시후)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 (생명보험회사 판매상품만 해당)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생존할 경우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액을 매년 생존 연금으로 지급(보증지급기간: 10년, 20년, 30년, 100세[101-연금개시나이] 등)
확정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 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나누어 지급(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장기저축성보험 ]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상품으로서 저축기능과 보장 기능을 겸한 실세금리연동형 또는 금리확정형 상품입니다.

기본적인 위험보장과 함께 최저금리 보장기능이 있어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거나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좋은 상품이며 10년 이상 가입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특징** : 보험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 폭 다양, 저축기능이 주된 보험, 비과세 가능

◆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가입자격** : 제한 없음

◆ **보험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등(단, 15년 이상은 생명보험회사만 해당)

◆ **가입금액** : 보험상품별로 상이

◆ **납입방법** :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일시납

◆ **이 율** : 확정이율, 공시이율 또는 약관대출이율에서 일정 이자율을 차감한 이율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 전액

\* 순보험료(적립보험료-사업비)에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리금 합계

◆ **세금혜택** : 비과세(10년 이상 유지시, 단, 2003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하여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예시**

(손해보험)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의 80% 한도
운전자 운전중 상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사망 : 가입금액 80% 이상 후유장해 : 가입금액 80% 미만 후유장해 : 가입금액의 3~80% 미만
강력범죄사망	주택내에서 강력범죄로 사망시	가입금액
만기생존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생존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

(생명보험)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생존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
사망보험금	사망 또는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발생시	500만원 +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

\* 보장내역과 지급금액은 보험회사의 상품별로 차이가 있음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

- 1996년 5월 13일~1998년 3월 31일 계약분 : 계약유지기간 7년 이상시 비과세
- 1998년 4월 1일~2000년 12월 31일 계약분 : 계약유지기간 5년 이상시 비과세
- 2001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계약분 : 계약유지기간 7년 이상시 비과세
- 200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 : 계약유지기간 10년 이상시 비과세

## [ CI보험 ]

CI(Critical Illness)보험이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CI보험이 보장하는 질병 또는 수술로는 중대한 암, 중대한 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 신부전증 등의 질병과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 수술, 심장판막 수술, 장기 이식 수술 등의 수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통상 50~8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시에 나머지 잔여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상품특징 : 중대한 질병 또는 수술을 보장

- ◆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 ◆ **종 류** : 종신형  
\* 보험회사별로 계약·납입방법, 특약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 판매
- ◆ **보험기간** : 종신
- ◆ **납입기간** : 일시납, 5·10·15·20년납, 55·60·70세납 등 다양
- ◆ **가입연령** : 통상 15~60세
- ◆ **납입방법** :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 ◆ **보장내용 예시**

지급사유	지급액
보험대상자가 가입기간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기간중 “중대한 질병”으로 “중대한 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시 계약 금액

◆ **세금혜택** : 소득공제(보장성보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1인당 합계액 연 100만원)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참고사항**

- CI보험은 생존과 사망을 동시에 고액 보장을 하는 관계로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 비쌌. 따라서 CI보험 가입 시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보장내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중대한 암, 중대한 심근경색증 등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암, 심근경색증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병원에서 암,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CI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함

### [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통원치료시에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상형 보험입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진료비는 그 진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며, 급여부분은 다시 국민건강보험 부담과 환자본인 부담으로 구분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및 통원시 실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급여 중 환자 본인부담금 + 비급여 의료비 -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금액을 실비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통원치료시에 발생한 의료비

◆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 **종 류** : 종합(입/통원)형,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 **보험기간** : 상품별 상이(통상 3년 또는 5년 마다 갱신)

- ◆ **납입기간** : 일시납, 3·5·10·15·20년납, 55·60·70세납 등 다양
- ◆ **가입연령** : 통상 0~70세
- ◆ **납입방법**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 ◆ **보장내용 예시(종합형)**

구분	보상금액
입원 의료비	입원으로 발생한 의료비중 '요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중 90% 해당액
통원 의료비	방문 1회당 '요양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요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

- ◆ **세금혜택** : 소득공제(보장성보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1인당 합계액 연 100만원)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 **참고사항**
  - 입원 의료비·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1회당 및 건당한도가 존재
  - 통상 갱신형으로 운영되어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

## 9.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상품

### [ 상호부금 ]

상호부금은 전통적인 계(契)를 제도화한 것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중도 또는 만기에 일정한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과거에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상호부금에 많이 가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상호부금에 가입하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 대출목적 보다는 저축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상품특징** : 대출수혜 가능, 확정금리부 적립식 저축

◆ **취급기관** : 은행

◆ **가입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자

◆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 은행별 상이

- 정액적립식 : 일반적으로 월 1만원 단위로 제한 없음

- 자유적립식 : 일반적으로 월 1~500만원이내 수시 적립

◆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5년 이내 1개월 단위

◆ **금 리**

구 분	6개월	1년	2년	3년
금리(연 %)	2.2~3.5	2.7~4.0	2.8~4.2	2.9~4.7

\* 2011. 12월 현재

◆ **중도해지이율**

- 통상 1개월 미만 예치시에는 이자가 없으나 중도 해지에 따른 적용 금리를 은행별로 달리함

◆ 만기후 이율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2 이하

◆ 대 출

- 대출자격 발생시기 : 총 납입회수 1/4 또는 1/3회차 이상 부금 납입후
- 대출금액 : 상호부금 계약금액 범위내(은행마다 상이)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참고사항

- 만기후에는 금리가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절반수준 이하로 낮아진다는 데 유의

[ 신용부금 ]

계약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매월(또는 매일) 적립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 받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서, 가입 즉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특징 : 대출수혜 가능, 은행의 상호부금과 유사한 상품

◆ 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적립방법 및 계약기간

- 월부금식 : 6개월 이상 5년까지 1개월 단위
- 일부금식 : 매일 적립하여 3년 이내(보통 100일)

◆ 계약금액 : 1,000원 이상(저축은행별 상이)

◆ 금 리 : 연 2.0~5.6% (2011. 12월 현재, 1년 만기)

◆ 중도해지이율

- 통상 1개월 미만 예치시에는 이자가 없으나 중도 해지에 따른 적용 금리를 금융기관별로 달리함

- ◆ 만기후 이율 : 보통예금 금리(연 1.0%) 적용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 ◆ 참고사항
  - 상호부금과는 달리 1회차 납입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금리 외에 특별금리를 가산하여 만기에 원리금을 수령하게 됨
  - 부금을 1개월 이상 선납하였을 경우에는 선납이자를 지급
  - 대출한도는 대체로 개인은 최대 1억원 이내, 중소기업은 최대 40억원 이내임

## [ 종합통장 ]

종합통장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입출금식 예금을 기본계좌로 하여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모든 적립식·거치식예금을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거래실적, 신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대출과 함께 고객특성에 따라 특화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패키지 상품입니다.

종합통장 자동대출제도를 이용하면 자신의 예·적금 거래실적, 신용카드 이용실적, 공과금 납부실적, 급여 이체실적 등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대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잔액이 마이너스(-)일 때에는 그 금액과 기간에 따라 대출이자를 내면 됩니다.

- ◆ 취급기관 :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도 은행의 종합통장 자동대출제도와 유사한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 **대출조건** : 예금평잔(보통 3개월), 정기에·적금 및 부금의 납입액, 급여(연금) 이체액,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이용액, 공과금 납부액, 외환거래 등 은행 거래실적과 거래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 **대출한도** : 보통 1,000만원 이내(신용도가 높거나 부동산 또는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최고 1억원 정도까지 한도가 확대됨)
- ◆ **대출기간** : 1년 이내(거래실적에 따라 3년까지 가능)
- ◆ **대출방법** :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인출하는 회전식 자동대출로 대출기간 만료시에는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한 후에 다시 대출
- ◆ **상환방법** :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종합통장에 입금하면 입금액만큼 대출금액이 자동으로 상환
- ◆ **대출이자** : 대출금액 및 일수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종합통장 잔액에서 정리되며 현행 대출이자율은 기본대출금리에 거래실적, 대출금액, 고객신용도 등에 따라 0~4% 정도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차등 적용됨
- ◆ **채권보전** : 담보, 연대보증 또는 신용(직업, 대출금액 등에 따라 채권 보전 방법이 달라짐)
- ◆ **참고사항**
  - 대출금액이 통장 잔액란에 마이너스(-)로 표기됨
  - 대출기간중 여유자금이 있으면 즉시 상환할 수 있어 만기에 구애받지 않고 빌려 쓴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므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카드결제, 각종 공과금 등을 종합통장에 자동이체 등록해 두면 납부일자에 잔액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음

## 10. 외화예금관련 금융상품

외화예금이란 우리나라 돈 이외의 타국의 화폐로 가입 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부금, 예치금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은행은 물론 단기금융기관, 체신관서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합니다.

### [ 외화보통예금 ]

보통예금처럼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 예금입니다. 가계의 외화 여유자금을 초단기로 예치하거나 입출금이 빈번한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해외송금을 자주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용한 상품입니다. 원화로 외환을 매입하여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특정국가 통화의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경우에는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달러, 엔, 파운드, 유로, 스위스프랑 등 다양한 통화의 외화정기예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 **상품특징** : 외화로 예금 및 인출, 낮은 금리 적용

- ◆ **취급기관** : 은행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예치기간** : 제한없음
- ◆ **금 리** : 연 0.1% 내외(2011. 12월 현재, 거주자 미국달러 보통예금 기준)
- ◆ **이자계산** : 3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복리)
- ◆ **세금혜택** : 일반과세 15.4% 적용
- ◆ **예금보호 여부** : 보호(원화예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 한도)

## [ 외화정기예금 ]

외화정기예금은 외화로 예금하고 외화로 인출하는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원화)과 마찬가지로 약정기간이 길수록 높은 확정이자가 보장되므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좋습니다.

▣ **상품특징** : 외화로 예금 및 인출, 중도해지시 낮은 금리 적용

- ◆ **취급기관** : 은행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예치기간** : 1일 ~ 1년(은행별로 다름)
- ◆ **금 리**

구분	1개월	6개월
금리(연 %)	0.3~0.9	0.8~2.4
* 2011. 12월 현재		

- ◆ **이자계산** : 매월 이자지급식 또는 만기 일시지급식
- ◆ **세금혜택** : 일반과세 15.4% 적용
- ◆ **예금보호 여부** : 보호(원화예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 한도)
- ◆ **참고사항**
  -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기시 최초 약정기간만큼 자동으로 만기가 연장되는 만기자동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신규예치시 신청 가능)

## [ 외화적립식예금 ]

자유로운 외화적립으로 예치기간별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약간 다르기는 하나 계약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화 예금중 정기적금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기적금보다는 적립일,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는 등 자유롭게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 ▣ 상품특징 : 적립일, 적립횟수 자유로움

- ◆ 취급기관 : 은행
- ◆ 가입대상 : 개인
- ◆ 예치기간 : 1개월 이상 1년 이내(자유적립식)
- ◆ 저축한도 : 제한 없음
- ◆ 금 리 : 자유화(은행별로 외화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적용)
-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 ◆ 예금보호 여부 : 보호(원화예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 한도)
- ◆ 참고사항
  - 만기 후에는 적용금리가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3 이하로 크게 낮아지는 데 유의하여야 함

## IV. 금융상품과 세금

### 1. 개요

#### □ 근거법률 및 세금의 종류

금융기관에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금융소득에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 그리고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동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이들 세금은 모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저축의 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세금에 대한 감면 등의 특례는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세율

현행 관련세법에 의하면 세금감면혜택이 없는 일반저축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 : 소득세액의 10%)를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비과세저축상품」의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

며, 「세금우대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9%)와 농어촌특별세(0.5%)를 합하여 9.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왔는데 최근의 변경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변경 추이							
(단위: %)							
변경시기	95.12.31 이전	96. 1. 1	98. 1. 1	98.10. 1	2000.1.1	2001.1.1	2005.1.1 (현행)
일반과세 원천징수세율(A+B)	21.5	16.5	22.0	24.2	22.0	16.5	15.4
이자소득세(A)	20.0	15.0	20.0	22.0	20.0	15.0	14.0
지방소득세(B)	1.5	1.5	2.0	2.2	2.0	1.5	1.4
저율과세 원천징수세율(C+D)	6.5	10.5	11.0	11.2	11.0	10.5	9.5
이자소득세(C)	5.0	10.0	10.0	10.0	10.0	10.0	9.0
농어촌특별세(D)*	1.5	0.5	1.0	1.2	1.0	0.5	0.5

\* 저율과세저축상품의 경우 대부분 지방소득세가 면제되고 감면소득세액 (일반과세 이자소득세 - 저율과세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

### □ 절세상품 선택요령

세금우대저축상품은 일반저축상품에 비해 38% 정도의 세금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세금 등을 공제한 수익률(세후 실효수익률)을 비교하여 세후 실효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리의 저축상품이라면 **비과세상품 → 세금우대상품 → 일반상품**의 순으로 가입하되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가입한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상품은 연말정산시 예금납입액의 일정비율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의 상품보다는 우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비과세 금융상품

### □ 개 요

비과세 저축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되고 일부 상품은 연간 종합소득신고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 □ 대상 상품

현재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및 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생계형저축,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저축상품은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됩니다. 한편 개인연금저축 등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으나 기존 가입자는 만기시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유의 사항

비과세 저축상품은 이와 같이 세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자격 등 제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가입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의 종류					
저축종목	취급기관	가입대상	가입기간	비과세한도	비 고
장기 주택마련저축	전 금융기관	- 만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85㎡ 이하 1주택 소유자 <sup>1)</sup>	7년 이상	분기 300만원	- 2012년말까지 가입한 경우만 해당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지역농·축협, 지구별수협	- 2ha 이하 농경지 보유농민 - 20t 이하 어선 보유어민	3년, 5년	- 일반농어민 : 분기 36만원 - 저소득농어민 : 분기 30만원	- 2014년말까지 가입한 경우만 비과세
출자금	상호금융(지역농·축협, 지구별수협, 지역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준회원, 계원		1,000만원	- 완전비과세는 농어민 또는 저소득근로자에 한하며, 일반조합원 등은 농어촌특별세 1.4% 과세 - 2012년말까지 비과세
예탁금				3,000만원	
장기저축성보험	보험회사,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우체국 보험	- 제한 없음	10년 이상	보험종류에 따라 상이	
생계형저축	전 금융기관, 직장공제회(특별법 설립)	- 남녀 60세 이상 장애인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가족 - 국가유공 상이자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자	금융기관 및 상품별 상이	3,000만원	- 2014년말까지 가입한 경우만 비과세
장기회사채형 펀드	자산운용회사	- 제한 없음	3년 이상	5,000만원	- 2009년말까지 가치식으로 가입한 경우만 해당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	자산운용회사	- 제한 없음	3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 2009년말까지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만 해당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녹색예금·채권·펀드	전 금융기관	-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	3년 이상	예금 2,000만원, 채권·펀드 3,000만원	- 2012년말까지 가입한 경우만 비과세

\* 2006.1.1 이후 가입자부터는 가입대상이 만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

### 3. 세금우대종합저축

#### □ 개 요

종전에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등 저축종목에 따라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저축기관이나 저축상품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일정한도내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대상저축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 공제, 보험, 일부 증권저축 등 포함)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저축상품이 해당됩니다.

\* 비과세저축상품, 신용협동기구의 예탁금(1.4%), 연금저축(5.5%)은 대상에서 제외

#### □ 세금혜택

우대세율 9.5%(소득세9.0%+농어촌특별세0.5%)를 적용하며 2001년부터는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시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인당 가입한도(계약액 기준)

20세 이상의 일반인은 1,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등\*\*은 3,000만원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 노인은 만 60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4.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

□ 소득공제 효과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금액별 세율만큼 세금을 덜 내며 따라서 한계세율이 높은 고액소득자일수록 공제효과가 큽니다.

예) 소득공제액이 2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별 절세효과	
과세표준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
1,200만원 이하	13만 2천원(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33만원(16.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2만 8천원(26.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77만원(38.5%)
3억원 초과	83만 6천원(41.8%)

\* 2012년 소득세율 기준

□ 소득공제대상 상품

상품명(공제비율)	공제가능액	비고
주택청약저축(40%)	300만원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단, 2006.1.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로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
근로자 주택마련저축(40%) ('97년 12월부터 취급 중지)		
장기주택마련저축(40%) <sup>1)</sup>		
개인연금저축(40%)	72만원	2000.12. 31. 이전 가입자
연금저축(100%)	400만원	2001. 2. 1. 이후 가입자 기존연금저축납입액과 퇴직연금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100%)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가입시에는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장기주식형펀드 <sup>2)</sup>	240만원 ~60만원	2008. 10. 20. 부터 2009년말까지 적립식펀드 중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장기계약한 경우만 해당

- 주 : 1) 2009년말 이전 가입자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2012년까지 소득공제  
 2)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불입액의 10%, 셋째 해는 불입액의 5% 소득공제  
 3) 기타 연말 근로소득공제 대상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단,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합계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이내)
  -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입금 이자 상환금액의 100%,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합계 및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1,000만원 이내(단 30년 이상 대출의 경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인정) 2012년부터 15년 이상으로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연 1천5백만원까지 소득공제(여타 대출은 연 5백만원)
  - 2010년부터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동 초과액의 20%(단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25%), 300만원 한도 단, 전통시장내 물품을 구입한 신용·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3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 100만원을 추가하여 총 400만원으로 확대
  - 국민연금 : 연간 본인부담액의 100% 소득공제

##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추징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의무가입기간이나 가입조건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 등이 추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품명	추징사유	추징금액
장기주택마련저축	1년 이내 중도해지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의 15.4%(일반과세 적용)
	1년 이상 5년 이내 중도해지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의 15.4%(일반과세 적용)
	7년 이내 중도해지	이자소득의 15.4%(일반과세 적용)
개인연금저축	5년 이내 중도해지	납입액의 4%(연간 72천원 한도)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수령시	이자·배당소득의 15.4%(일반과세 적용)
연금저축	5년 이내 중도해지	납입액의 2.0%(2005. 12월 이후 퇴직연금 포함 연간 300만원, 2011년 부터는 400만원 한도)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해지액-연간 300만원(또는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2.0%

\* 소득공제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감면받은 금액만 추징함

## 5. 금융소득 종합과세

### □ 개 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98년부터 일시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및 연금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15.4%)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수준에 따라 6.0%~38.0%의 세율 적용)을 적용, 종합과세합니다.

### □ 금융소득 종합과세율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별도 납부, 2012년 소득세율 기준

### □ 적용 제외 대상상품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의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33.0%(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와 납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생년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V.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기금 등을 적립하는 등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 현행 예금보호제도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http://www.kdic.or.kr)) 참조

#### □ 보호대상 금융기관

현재 은행(농·수협중앙회,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동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 제외)·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에 해당됩니다.

다만, 농·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 □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보험료율	8/10,000	15/10,000	15/10,000	15/10,000	40/10,000
법정한도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 □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저축상품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 해당됩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 받는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 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닙니다. 이러한 투자상품은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중에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별 예금보호 대상 여부

구분	보호대상	비보호대상
은행 (농·수협 중앙회, 외은지 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li> <li>-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li> <li>-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li> <li>-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li> <li>- 외화예금(예금자별 원화예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 한도)</li> <li>-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적립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li> <li>-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li> <li>-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li> <li>-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li> <li>- 주택청약저축</li> </ul>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 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li> <li>-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li> <li>-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li> <li>-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적립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li> <li>-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li> <li>-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li> <li>-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li> </ul>
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단 변액보험 제외)</li> <li>-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li> <li>-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적립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li> </ul>
종합 금융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기업어음(CP) 등</li> </ul>
상호 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li> <li>-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발행 채권 등</li> </ul>

\*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부보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금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 ▶ 인가취소·해산·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중 일

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 ▶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 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금융기관과 B금융기관이 합병시 1년까지는 각각의 보호금액한도 5,000만원에 대해서 보호합니다. 그러나 1년 경과후는 1개 금융기관으로 보아 5,00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 예금보험 지급절차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 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기도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예금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 '소정의 이자' 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을 적용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이 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 퇴직연금의 예금보호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한 근로자(예금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다른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다른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 □ 예금보호관계 표시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보호여부 등 예금보험관계의 성립여부를 표시함으로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예금자 보호

### □ 상호금융(지역농·축협, 지구별수협 및 지역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조합의 중앙회와는 달리 정부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단, 지구별수협중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은 보호대상임)됩니다.

그러나,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지구별수협 및 지역산림조합은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는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금융기관과 형평을 맞추어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상호금융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여 원리금을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는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우체국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기관이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보장합니다.

## □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적금에 대하여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내부의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출자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 록

I.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II. 부동산과 세금

III.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제도

IV.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제도

V.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VI.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VII.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경제교육

VIII. 한국은행 이용 안내

## I.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 1. 복리의 위력

꾸준한 저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축의 경제적 성과가 탁월하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복리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복리효과는 간단히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이자부분이 커지면서 전체 저축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더 많이 붙어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축기간입니다. 저축액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축기간이 짧으면 금리가 높아도 이자의 절대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기간이 길면 약간의 금리 차이에도 이자규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저축을 계획할 때는 금리의 예상흐름을 가늠해 보아 저축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래의 금리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크게 장기와 단기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즉, 금리 상승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거나 시중 금리수준에 따라 이자율이 변하는 변동금리형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여 상승하는 금리 추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금리하락기에는 3년 이상의 장기로 운용하면 고금리의 이익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 복리의효과\*

(단위: 만원)

기간	5%	10%	15%	20%	25%
5년	1,270	1,610	2,010	2,480	3,050
10년	1,620	2,590	4,040	6,190	9,310
15년	2,070	4,170	8,130	15,400	28,420
20년	2,650	6,720	16,360	38,330	86,760
25년	3,380	10,830	32,910	95,390	264,690
30년	4,320	17,440	66,210	237,370	870,790
35년	5,510	28,100	133,170	590,660	2,465,190
40년	7,030	45,250	267,860	1,469,770	7,523,160

\* 1,000만원을 복리로 투자했을 때

## [72의 법칙]

예금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수익성 즉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선택시 수익성을 따지게 되는데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보니 실감이 나지 않고 구체적인 금액을 구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이럴 때 유용한 방법이 '72의 법칙' 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72의 법칙' 이란 원리금이 두 배로 불어나는 데 필요한 저축기간과 수익률의 곱이 100%가 아니라 복리의 위력 때문에 72%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이용하면 원리금이 두 배가 되는 데 소요되는 저축기간이나 요구되는 수익률을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6%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원리금이 최초 원금의 두 배가 되는 데 소요되는 저축기간은 '72÷6%' 의 식에 의해 12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10년 동안에 원금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요구되는 수익률은 7.2%(72÷10년)가 됩니다.

## 2. 저렴하게 대출받는 방법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고시하는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대출은 고객의 신용도나 거래실적에 따라 0.5%포인트 정도까지 금리가 낮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급여통장이나 각종 결제통장이 있는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자신의 할인폭을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꼭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신용대출도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거래은행 이용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실적을 늘리면 대출한도 확대나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은행과의 거래실적만으로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금리혜택도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거래은행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래은행을 활용하라는 것은 가급적 금융거래를 한 군데로 몰아서 하라는 의미일 뿐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신용카드를 만들고 타행이체 등을 반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출조건은 한번 결정되었다고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 인상 등으로 대출 상환능력이 높아진 경우 신용평가를 다시 받아 금리인하의 여지는 없는지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만기후 연장시에도 금융기관이 제시하는대로 그냥 연장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금융기관과 대출금리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심사가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 자동적인 금리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함께 신용평가를 받은 뒤 신용등급이 좋은 쪽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좀 더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출받을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금액에 따라 연 1.0%포인트 이내의 금리할인 및 수입인지대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3. 신용카드 돌려막기의 무모함

신용카드 돌려막기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후 이것을 못 갚아 신체포기각서를 쓴다느니, 자살을 했다느니 하는 안타까운 뉴스도 접하곤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들을 때마다 도대체 어찌다가 저렇게 되었지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현금서비스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드 회원들로 하여금 마치 제 돈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고 그만큼 쉽게 서비스를 받게 합니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경계심이 조금 느슨해지면 금방 한도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늦어버려 매달 결제대금을 갚기 위해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00만원이 1~2년 사이에 수백만원으로 불어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지만 돌려막기의 행태를 잘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카드의 결제대금 200만원을 막기 위해 B라는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200만원에 현금서비스 수수료(약43,000원)를 더한 2,043,000원을 빌리는 게 아니라 CD기의 인출단위가 만원이므로 205만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 이럴 경우 현금서비스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용돈도 떨어졌다는 생각에 5만원을 더 채워 210만원을 찾는 식으로 더 빌리게 됩니다. 이

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새 돌려막기 해야 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신용카드 연체자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돌려막기의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곧 파탄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4. 마구 쓰게 되는 마이너스대출

한때 많은 직장인들이 마이너스대출통장을 한 두 개씩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대출기업의 부도로 혼이 난 경험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채권확보가 수월한 가계대출에 치중하면서 마이너스대출을 늘린 결과입니다. 여기에 언제 어떻게 급전이 필요할지 모르고 당장 통장에 잔액이 없지만 언제나 내 돈처럼 빼서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마이너스대출을 이용해 왔습니다.

처음엔 비상시 대비용으로 가볍게 만들어 둔 마이너스통장이지만 어지간한 자제력과 노력없이 그대로 부채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많이 들어 알기 때문에 쓰기를 두려워하면서도 마이너스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이 낮아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쓰는 걸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마이너스대출은 현금서비스보다 오히려 갚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는 이자가 많기는 하지만 한 달 단위로 만기가 돌아와 결제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큰 반면 마이너스대출은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상환을 자꾸 미루다보면 어느새 대출금이 불어나 결국 약정한 대출한도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언제든 쉽게 빼서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소비성향도 높아져 일단 마이너스대출의 맛을 보게 되면 쉽게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마이너스대출을 만들지 않거나 만든다면 대출한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용용도를 분명히 해두어 그야말로 비상시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5. 『-50% ⇒ +100%』 : 잃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다

주변에서 주식투자를 해봤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들 잃었다고만 할 뿐 벌었다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랫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등락을 반복했다고는 하나 10년, 20년 전보다는 엄연히 올랐는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수의 법칙’이라는 수학의 기초원리를 가지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절반(50%)으로 떨어졌다고 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다시 50%만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잔존가액 50%(=100%·50%=1/2)의 역수인 2배, 즉 100%가 올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20%가 떨어졌다고 할 경우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0%만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잔존가액 80%(=100%-20%=80/100)의 역수인 100/80(=1.25)배, 즉 25%가 올라야 합니다. 결국 주가가 떨어졌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떨어진 비율보다 더 많이 올라야만 원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이라는 위험관리의 원칙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선불리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예측이 몇 번 들어맞으면 자신의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위험요소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투

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동안 쌓아놓은 수익마저도 한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 6. 레버리지의 위험

좋은 투자기회를 발견했으나 자신이 가진 돈이 충분하지 못할 때 대출 등 타인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할 경우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실제 자신이 투자한 자금 대비 수익률은 훨씬 높아지는데 이런 걸 일컬어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돈 1,000만원에 추가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총 2,000만원을 투자해서 4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전체 수익률은 20%(=400만원÷2,000만원)이지만 실제 내가 투자한 금액 1,000만원 대비 수익률은 40%(=400만원÷1,000만원)나 됩니다. 물론 수익금중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차감해야 되지만 어쨌든 순수하게 자신의 돈만으로 투자한 경우보다 수익률이 높아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달콤한 투자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반대로 손실을 볼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돈까지 완전히 잃어버리는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의 예에서 만약 투자자산의 가치가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면 갚아야 할 돈 1,000만원을 빼고 남은 돈은 0원이 되어 자신이 투자한 원금 1,000만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오히려 투자자산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더 떨어지면 대출받은 돈까지 날릴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본인의 빚으로 쌓이게 되는 아찔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큰돈을 벌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투자에 대한 위험분석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할 경우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7. 성공하기 힘든 빛과 저축의 동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 손해보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의 영업구조는 고객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예금을 받아 높은 금리로 대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싼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내면서 낮은 이자율에 감지덕지하며 예금하는 고객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봉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차분히 손익 계산을 하지 않고 자신이 기댈만한 목돈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이런 불합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리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고 안정적인 투자처가 없는 한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안전하면서 동시에 대출이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금융상품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기 이전에 원금을 갚으면 취급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득실을 잘 따져서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 8. 적립식 펀드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재테크 수단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품중 하나는 적립식 펀드입니다. 적립식 펀드는 투자자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입니다. 적립식 펀드는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주가가 오를 때는 매입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cost averaging)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리면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져 나중에 환매할 때 이익이 좀 더 많아지거나 손실을 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가 상승에 따라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높았던 것을 적립식 펀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해하고 적립식 펀드는 모두 수익률도 좋고 손실 위험도 없는 투자상품으로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립식 펀드는 어디까지나 평균 매입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을 뿐 거기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 손실 가능성이 없다든지 수익률이 탁월하게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립식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다른 금융상품들을 고를 때처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환매가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환매시점을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9.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편리하다?

많은 사람들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사용을 꺼립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현금 서비스를 사용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금서비스는 일정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으므로 잘만 활용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유용합니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나 돈 받을 날짜와 결제일자가 맞지 않아 난처할 때 등에는 고마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현금서비스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이라도 돈이 생기면 곧바로 갚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때 고작 하루 이틀을 빌린 것 치고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서비스 수수료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비례하는 이자 외에 현금서비스 받을 때마다 하루를 쓰나 한 달을 쓰나 일정비율로 취급수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연 20% 안팎 수준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취급 수수료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는 매번 0.5% 정도를 때

는데 기간과 관계없이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 400만원을 ‘단 하루’ 썼을 경우 이자는 연 20%의 1/365인 2,190원이지만 취급수수료는 20,000원(=400만원×0.5%)이나 되어 원금과 22,190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한 달 후의 결제일에 상환한다면 이자 65,754원에 2만원(취급수수료)을 더한 85,754원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금서비스라도 이용해야 하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10. 금융상품은 장기금융상품이 최고다?

낙시꾼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내 것이 되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잡아먹을 텐데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낙시꾼들의 심보가 고약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따져보면 자신의 만족감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행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금을 유치할 때에는 자금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예금금리를 높게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금을 유치한 이후에는 이전만큼 노력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예금상품의 경우 약정기간 동안의 금리변동을 금융기관들이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초기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낮아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약시 손해가 큰 예금주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 더 나은 투자기회를 놓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복리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투자가 필수적이지만 그 경우에도 처음부터 무작정 만기가 긴 장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 보다는 일단 1년이나 또는 중기상품에 투자하고 만기가 되면 재연장하거나 다

른 금융상품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생활에 바쁘다보면 만기가 됐는데 모르고 지나칠 수 있고 설사 안다고 해도 대체 투자방안을 결정하지 못해 그냥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기가 지나도 기존의 약정금리가 적용될 거라는 생각에서 인출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축상품은 만기 후 적용금리가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달러 등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만기를 적어두고 미리 대체 투자방안을 마련하여 그냥 놀리는 자금이 없도록 신경써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11. 전문가들은 항상 믿을 수 있다?

저축이나 투자 대상을 찾다보면 무슨 금융상품이 그리 많은지 숨이 막힙니다. 모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상품의 이름은 제 각각이며 어려운지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저축이나 투자를 포기할까 하다가도 이왕 마음 먹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은행창구를 찾거나 아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상품의 종류가 매우 많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상품이 탄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조차도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상품이나 자신이 잘 아는 상품 위주로 추천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조언해주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물을 때는 그 사람과 소개해준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 간의 관계 등을 잘 생각해본 후 투자 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각종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투자상품의 가

입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다보면 안내 내용을 차분하게 생각하기 어려워 즉흥적으로 가입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심중팔구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영업방식은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을 신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때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건 전화로 가입이나 전환을 권유할 때에는 여유를 갖고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를 받아두고 자세히 알아본 뒤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 12. 자신의 신용을 항상 조회해 보아야 한다?

대출광고 중에는 신용대출을 해줄테니 신용조회를 해보라는 것도 많습니다. 신용대출이라는 말에 돈이 필요한 사람의 귀가 솔깃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용조회는 통상 돈을 빌리는 경우 외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당사자의 재무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조회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횟수가 많았거나 대출이 긴요할 만큼 재무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업체들은 신용조회 기록을 유지하고 그 횟수 등을 반영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용조회는 결과 본인의 신용점수가 떨어져 대출이자나 높아지거나 심지어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조회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없이 신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www.credit4u.or.kr)을 통해 본인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13. 사채업자들은 매우 친절하다?

요즘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의 스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대부업자들의 대출 광고입니다.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었어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서도 구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이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시적으로는 한숨을 돌릴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어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이자 앞에서 더 큰 한숨을 내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사채업을 양성화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대부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광고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 벽보나 전단은 물론 공중파 방송에서도 쉽게 대부업자들의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는 은행 등 제도금융권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경제여건이나 신용상태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금회수에 대한 위험이 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싼 이자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 수요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긴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중 처분 가능한 것들을 우선 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은행의 채무재조정 제도나 법원의 파산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14. 보험 중도해약은 독약

보험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보험가입률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위험에 대한 인식도 과거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가입률이 높은 데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설계사들의 인맥을 이용하는 등 우리나라 특유의 저돌적인 영업방식으로 모집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대한 일반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종 보험의 가입과 유지는 보장내용 못지않게 중도해약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가계는 장기간의 보험료 납부가 계속 부담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험료 부담능력과 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 가입결정을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단 가입하고 난 이후에는 중도에 보험을 해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도에 보험을 해약할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분만 되돌려 받거나 이것마저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 계약내용 변경을 통하여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 연장정기보험제도 및 보험계약대출제도 등이 있습니다. 감액(Reduced) 제도는 보장(보험금) 수준과 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방법(일부 해지)으로, 감액된 부분은 해약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감액완납(Reduced Paid-up) 제도는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법입니다. 연장정기보험(Extended Term) 제도는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보장)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보장)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험계약대출(Policy Loan) 제도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약환급금(담보)의 일정 범위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 보험의 보장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약하고 나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기보다는 부족한 보장을 위하여 추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연금보험은 여유자금이 없어 붓기 힘들더라도 노후 및 예기치 않는 위험에 대비하여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II. 부동산과 세금

부동산관련 세금에는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2011. 1. 1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취득세 납부기한(취득 후 60일 이내)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50%(중전의 취득세액 해당분)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2010년말 종료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2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표	세율
매매 (주택)	9억원 이하 이면서 1주택	취득가액	2%	취득세액의 50%	85㎡ 이하: 비과세 85㎡ 초과: 50%	취득세액의 50%	20%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	취득가액	4%	취득세액의 50%	10%	취득세액의 50%	20%
매매(주택제외), 신축, 상속, 증여		취득가액	4%	취득세액의 50%	10%	취득세액의 50%	20%

## 2.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할 세금

## 가.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에는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어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1%
	1.5억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 건축물	0.25%
종합합산과세 토지 <sup>1)</sup>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과세 토지 <sup>2)</sup>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토지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기타 토지	0.2%

주 : 1) 종합합산과세 토지 :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 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  
2) 별도합산과세토지 : 사업용토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부속토지

## 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자기 시·군·구 내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세율 0.15~0.5%)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세율 0.5%~2%)를 과세하며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어 과세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을 통하여 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사업용토지 등)로 구분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초공제 3억원이 추가되어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이 됩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기준금액		
과세대상	과세단위	과세기준금액
주택	인별 합산	개별(공동) 주택가격 6억원, 다만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초공제 3억원이 추가 적용돼 9억원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5억원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80억원

## 2) 종합부동산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방법

종합부동산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며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t{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누진공제}) \times \text{공정시장가액비율} - \text{법정공제세액}$$

종합부동산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억원 이하	0.5%	-	80%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	15억원 이하	0.75%	-	80%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	200억원 이하	0.5%	-	2009년 70%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2010년 75%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2011년 이후 80%

주택분에 한하여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10%, 65세 이상이면 20%, 70세 이상이면 30%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3. 부동산 양도시 내야 할 세금

부동산을 팔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조세 정책적으로 양도소

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도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즉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요건 및 거주 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와 장기저당담보주택의 양도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자경농지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양도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1세대 2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양도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도 하기에 비과세 및 감면요건 등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세율			
토지·건물	보유기간 1년 미만	50%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40%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일반세율(6~38%)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일반세율(6~38%), 다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에는 10% 가산			
비사업용토지 등	일반세율(6~38%), 다만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10% 가산			
미등기 양도	70%			
기타자산	보유기간 제한없음	일반세율(6~38%)		

주: 2012년 시행 기준

## 4. 부동산 상속·증여시 내야 할 세금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 LTV와 DTI ]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주택관련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LTV나 DTI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하며 DTI(Debt To Income ratio)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말하는 데 주택담보대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LTV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 자산가치를 얼마나 인정해주는지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LTV가 60%라면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적은 것이 보통입니다.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할 것에 대비해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빼고 대출해주기 때문이죠.

LTV 규제는 해당 주택 담보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도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DTI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LTV처럼 주택 가격에 비례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인 A씨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LTV 40%를 적용하면 7억원 대비 40%인 2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DTI 40%를 추가 적용하면 대출가능액이 줄어듭니다. 즉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이자율 6% 고정금리 적용)조건 적용시 1억 5,000만원 밖에 빌릴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만기를 20년으로 늘린다면 연간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2억3,000만원 정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Ⅲ.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제도

우리는 주변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자격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의 복지시책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1.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 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함

## ○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함

부양자녀 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 기준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70만원	140만원	170만원	200만원

## ○ 주택 및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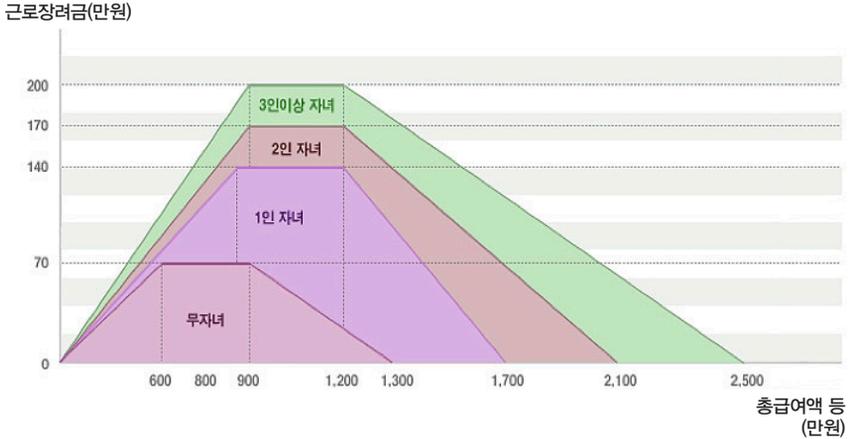
##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자
-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 근로장려금 산정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b>1. 배우자가 있으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b>	
0원 ~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60
600만원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7/40
<b>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b>	
0원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40
800만원 ~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만원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28/100
<b>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b>	
0원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7/90
900만원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90
<b>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b>	
0원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9
900만원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만원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3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의 총수입금액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참조]

## □ 신청 방법

이러한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1일~5월 31일) 내에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2012년 4인가구 기준 월 1,495,550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현금급여기준*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 법 지원액(지방소득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 수준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씩 증가

### 3.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자들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에 의거 1~3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은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형태로 특별현금급여가 지원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일정부분 본인의 부담이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 급여내용의 20%, 재가급여의 급여 당해 장기요양 급여내용

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을 50% 경감해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www.longterm-care.or.kr](http://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 4.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주 소득자의 사망, 화재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저소득층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를 정부로부터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계층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

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최저생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등은 최장 6회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거나 또는 시·군·구청 사회 복지과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제도

### □ 미소금융

미소금융제도란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 과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상당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취업정보 연계제공 등을 통하여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7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자가 해당이 됩니다.

신용평가기관		
회사명	서비스명	신용정보조회사이트
한국신용정보(주)	마이크레딧	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주)	크레딧뱅크	www.creditbank.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다만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하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자,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13,500만원, 기타 지역의 경우 8,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액은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 창업임차자금대출, 운영자금대출, 시설개선자금대출, 사업자 무등록 자영업자를 위한 무등록사업자대출 등 대출종류에 따라 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고 이율은 시장금리 이하(2011. 4월말 현재 4.5% 이내)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소금융중앙재단(www.mif.or.kr)이나 지역미소금융재단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새희망홀씨대출

새희망홀씨대출은 기존 은행권의 서민금융 상품인 희망홀씨대출을 개선한 상품으로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계층이 주요 대상이지만 신용등급이 1~4등급이면서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 및 조세·과태료 체납이 있었거나 빈번한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평가 결과와 대출위험도 및 자금조달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연 6.5~14%(2010.12월 현재) 수준입니다. 대출한도는 2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자의 소득수준과 신용대출금 규모를 감안해 책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중은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http://www.kfb.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햇살론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신용자와 연소득이 26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서민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햇살론은 자금의 목적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생계자금은 최대 1천만원, 사업운용자금은 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파산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리는 금리상한(2011. 9월 현재 상호금융 10.95%, 저축은행 14.24%)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보증수수료는 별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햇살론 안내 홈페이지([www.sunshineloan.or.kr](http://www.sunshineloan.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 지원대상 및 조건			
	사업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
공통조건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신용 6등급 이하 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가능		
지원대상	영업종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창업교육 이수후 개업한지 1년 이내(단,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중인 근로자, 영업종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대출금액	최대 2,000만원이내	최대 5,000만원이내	최대 1,000만원이내
상환방식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3~5년 균등상환
적용금리	상호금융기관 10.95%이내, 저축은행 14.24%이내에서 자율 적용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책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포털사이트인 '서민금융119서비스' (<http://s119.fss.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IV.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제도

### 1.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체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인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급여제도,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가입	여유있는 생활보장	⇒	개인연금
기업보장	표준적인 생활보장	⇒	퇴직급여제도
사회보장	기본적인 생활보장	⇒	국민연금

사적연금은 2005년 12월 이전에는 법정퇴직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2월 1일부터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체계

		제도명	취급기관	감독부처
연금제도	국가보장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행정안전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교육과학기술부
		군인연금	국방부	국방부
	기업보장	[퇴직금제도] ⇒ [퇴직급여제도]*	보험, 은행 등 금융기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보험, 퇴직신탁, 종업원퇴직 적립보험 등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퇴직금제도		
	개인가입	개인연금	보험, 은행 등 금융기관	기획재정부, 금융 위원회, 금융감독원

\* 2005. 12. 1일부터 시행

##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매월 표준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근로자일 경우 고용주가 그 절반을 부담합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적립해야 하며 60세 이상(소득이 없을 경우는 55세)부터 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른 데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53년에서 56년 출생자는 61세부터, 57년에서 60년 출생자는 62세부터, 61년에서 64년 출생자는 63세부터, 65년에서 68년 출생자는 64세부터,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개인연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사적연금(노령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한 저축상품의 일종입니다. 증권회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에서 신탁 및 보험·공제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2001. 2. 1일부터는 기존의 개인연금저축(비과세)과 별도로 연금저축(세금우대)을 판매함에 따라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는 분기별 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는 472만원(퇴직연금 포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비교		
구분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대상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거주자	개인연금저축: 만 20세 이상 국내거주자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가입 강제성	의무가입	임의가입
비용부담	본인, 고용주가 반씩 부담	본인 부담
적립기간	10년 이상	10년 이상
가입한도	매월 실제소득액의 일정비율	분기 300만원 이내 자유적립
연금수령시기	60세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2033년 65세)	55세 이상
조건변경 또는 중도상환	불가능	가능
연금지급방법	일정금액을 평생 지급	신탁: 5년 이상 실적배당 지급 보험·공제: 5년 이상 연동공리 지급
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은행 등 전금융기관
세제혜택	연금소득 과세: 기존납입분 비과세, 2001년이후 납입분은 과세 소득공제: 2001년에는 1/2, 2002년부터 전액 공제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매년 72만원까지 소득공제(2000.12.31 이전 판매) 연금저축: 과세(세금우대), 매년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

### 3.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기업이 임직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에 퇴직급여를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2005. 12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가.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Pension)」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 있으며 사업장별로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입니다.

###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의 비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p>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규약에서 급여액을 정하는 제도</p>	<p>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규약에서 기여액을 정하는 제도</p>
기업부담금	- 산출기초율(자산운용수익률, 퇴직률 등) 변경 시 변동	- 확정(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적립금 운용	- 기업이 운용지시 - 운용손익이 기업에 귀속	- 근로자가 운용지시 - 운용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
이직시 퇴직연금 이전	- 새 회사의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가능	- 새 회사의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가능
퇴직급여 형태 및 금액	- 연금(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일시금 : 근속년수×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연금(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일시금 : 개인별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급여수준	- 퇴직금과 동일(일시금 기준) - 연금은 일시금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	-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상이
연금계리*	- 필요	- 불필요
긴급자금 필요시	- 담보제공 가능(법정사유 충족시)	- 중도인출 · 담보제공 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적합한 기업 /근로자	- 연공급 임금체계를 가진 사업장 -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기업 - 제도 선택이 어려운 경우 → 나중에 DB에서 DC로 전환	- 연봉제 채택 사업장 - 체불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근로자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근로자 측면의 제도선택 기준	-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경우 유리	-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경우 유리

\* 임금상승률, 퇴직률, 예정이율 등을 이용하여 장래에 지급될 퇴직급여금액을 구하고 이를 총당하기 위해 기업이 얼마 만큼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를 산출하기 위한 수리 통계적인 방법을 말함

## 나. 퇴직연금규약

기업(사용자)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규약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규약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                   |                      |
|-------------------|----------------------|
| □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 □ 급여수준               |
|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 □ 가입기간               |
| □ 재정건전성 확보(확정급여형) | □ 부담금의 부담과 납부(확정기여형) |
| □ 적립금 운용방법(확정기여형) | □ 중도인출(확정기여형) 등      |

## 다.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무건전성 등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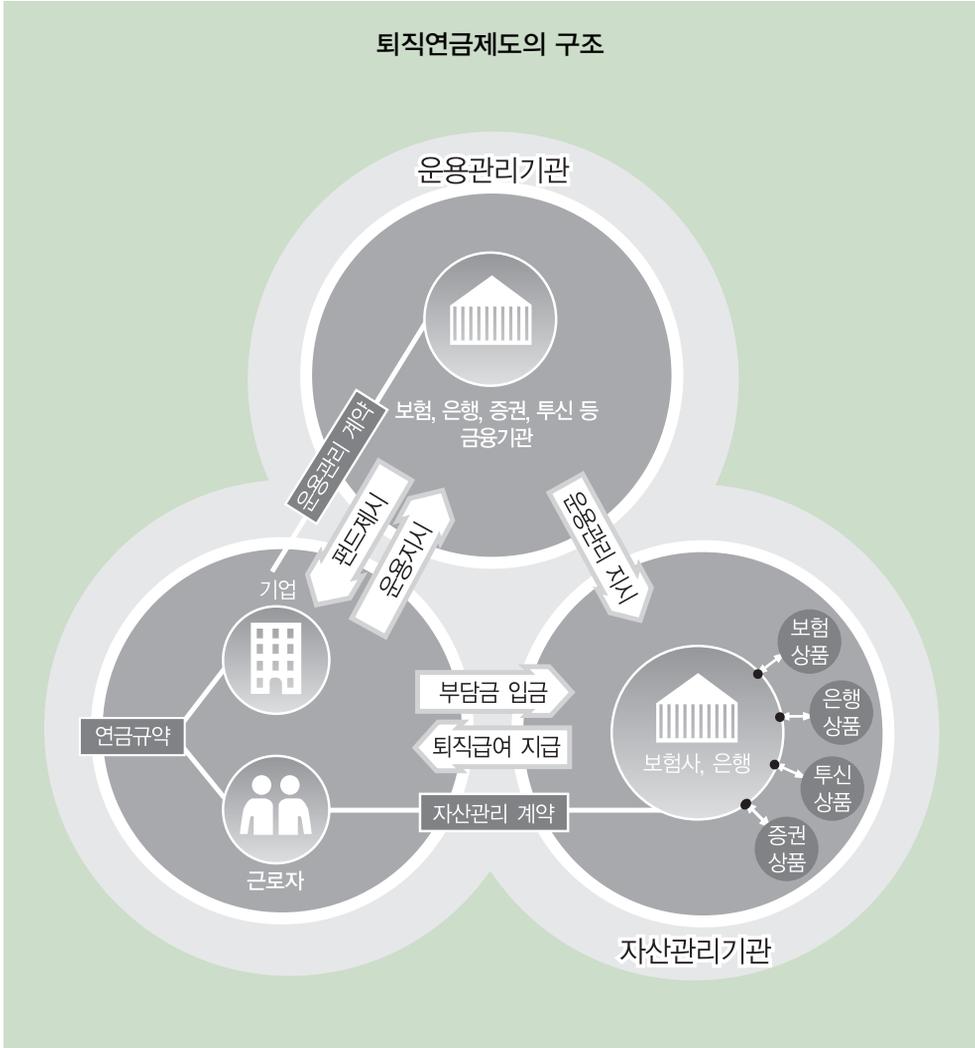
## 라. 퇴직연금의 수령시기 및 금액

퇴직연금의 급여는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시에 받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일시금도 가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정급여형** : 일시금은 「근속년수 × 30일분 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은 일시금을 분할하여(예: 최소 5년, 10년, 종신 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 일시금은 근로자별로 매월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 운용한 결과에 따라 다르며, 연금은 확정기여형과 같습니다.



## 마. 개인퇴직계좌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 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할 수 있는 계좌로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근로자들이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관련기관 안내

구분	홈페이지	구분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a href="http://www.mw.go.kr">www.mw.go.kr</a>	국민연금공단	<a href="http://www.nps.or.kr">www.nps.or.kr</a>
고용노동부	<a href="http://www.moel.go.kr">www.moel.go.kr</a>	공무원연금공단	<a href="http://www.geps.or.kr">www.geps.or.kr</a>
행정안전부	<a href="http://www.mopas.go.kr">www.mopas.go.kr</a>	사립학교직원연금공단	<a href="http://www.ktpf.or.kr">www.ktpf.or.kr</a>
국방부	<a href="http://www.mnd.go.kr">www.mnd.go.kr</a>	전국은행연합회	<a href="http://www.kfb.or.kr">www.kfb.or.kr</a>
기획재정부	<a href="http://www.mosf.go.kr">www.mosf.go.kr</a>	생명보험협회	<a href="http://www.klia.or.kr">www.klia.or.kr</a>
금융위원회	<a href="http://www.fsc.go.kr">www.fsc.go.kr</a>	대한손해보험협회	<a href="http://www.knia.or.kr">www.knia.or.kr</a>
교육과학기술부	<a href="http://www.mest.go.kr">www.mest.go.kr</a>	자산운용협회	<a href="http://www.amak.or.kr">www.amak.or.kr</a>

#### 4.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시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국민연금은 10년, 직역연금은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0세(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늘어나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2009.8월)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로서 국립병원에서 15년간 일한 간호사가 민간병원으로 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에서는 2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게 되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5년 더 불입하여 20년을 채우면 공무원연금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기준에 의해 1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고 나머지 5년에 해당하는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 기준에 의해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계연금 지급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연계연금 지급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금 지급기준
10년 이상	국민연금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20
1년 미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 일시금

## V.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란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을 방치할 경우 범죄 등 사회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데다, 갹생 의지가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국가경제에 더 낫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에는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 프로그램,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일부 변제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처지에 속한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공동협약에 의거 신용회복위원회가 상시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공동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앞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채권금융기관의 동의하에 채무조정계획이 확정되면 실행됩니다. 지원내용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이 있습니다.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대상채무자가 장기·저리로 신규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대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해제함으로써 대상채무자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등 총 15억원 이내의 채무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재원조달과 채무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제도는 파산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최종적인 채무자 구제제도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하며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소멸시킴으로서 파산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청산형 구제절차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의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보전명령을 통해 파산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 처분 및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고 지급불능의 원인, 재산은닉 여부 및 채권자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구분	사적구제제도		법적구제제도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2.10.1	2004.5.20	2004.9.23	1962.1.20
대상채권자	협약가입 금융기관	협약가입 금융기관	제한없음(사채 포함)	제한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5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과중 채무자인 봉급 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조정수준	변제기간 8년이내, 이자채권 전액 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까지 감면	변제기간 8년이내	변제기간 5년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법적효력	사적조정	사적조정	변제완료시 면책	청산 후 면책
연체정보해제	신용회복 지원 확정시 해제	신청 즉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 신속하고 저비용</li> <li>-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 안내가 잘 이루어 짐</li> <li>-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신용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li> <li>- 확정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채무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li> <li>-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지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li> <li>-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li> <li>- 보증인에게는 개인회생 인가 또는 파산 선고의 효력이 없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연체자로 등록된 자만 신청가능</li> <li>-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대리인의 조력 필요(비용증가)</li> <li>-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이 따름</li> <li>-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li> <li>- 개인의 특별사정 반영 등에 융통성이 적음</li> </ul>	

## Ⅵ.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저축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자산운용회사, 우체국, 보험회사,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 1. 은행

은행은 가계나 기업 등 일반 국민으로부터 예금·신탁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해 주는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은 다른 저축기관에 비해 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다소 낮은 편이나 광범위한 점포망과 전국적인 온라인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입출금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저축기관 중 가장 다양한 저축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지로, 타행환, 자동응답서비스, 공과금자동납부, 대여금고, 야간금고 등의 편리한 부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으로 구분하고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습니다.

주요 취급상품으로는 예·적금, 금전신탁 이외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습니다.

## 2.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는 민간부문의 외자도입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에는 예금과 보험 업무를 제외한 단기금융업무, 외화조달 및 주선업무, 리스업무, 투자신탁업무, 유가증권업무, 회사채발행 주선업무, 중장기대출업무 등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거의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축상품으로는 기업어음(CP),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3.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금융편의와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으로 과거에는 상호신용금고로 불렸으나 2002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취급하고 있는 저축상품의 실효수익률이 은행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금리가 은행보다는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취급중인 상품은 은행 예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나 그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신용부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표지어음 등이 있습니다.

## 4. 신용협동기구(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기구는 영세소득자의 저축 증대와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합

원 또는 회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역 서민 금융기관입니다. 신용협동기구에는 농·어촌지역의 농어민 등으로 조직된 상호금융(지역농·축협, 지구별수협 및 지역산림조합), 거주지역·직장 등 공동 유대관계로 조직된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특징은 대외신인도 면에서 열위에 있으나 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금리와 세제상의 우대 혜택을 준다는 점과 손쉬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들 신용협동기구의 저축상품에는 출자금, 자립예탁금, 정기에탁금, 정기적금 등이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유사한 각종 공제 상품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금융중 지역농협 및 지구별수협은 이들 상품 외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 5.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펀드 또는 뮤추얼펀드를 만든 후, 판매회사(은행, 증권회사 등)에 펀드의 자금 모집을 의뢰하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이 모아지면 이를 유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투자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운용실적대로 분배하는 다시 말해 투자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자산운용회사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투자자 또는 직접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소액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주요 취급상품(펀드)으로는 증권간접투자펀드, 파생상품간접투자펀드, 부동산간접투자펀드, 실무자산간접투자펀드, 단기금융상품펀드(MMF: Money Market Funds), 재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 특별자산간접투자펀드 등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판매회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6. 우체국

정부기관인 우체국은 은행 예금에 해당하는 우체국예금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에 해당하는 우체국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세금·공과금 등의 수납, 공과금 자동이체, 수표발행 등 생활에 편리한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경영주체가 정부이므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데다 원리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우체국간 온라인으로 연결된 대규모 점포망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체국예금에는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으며, 우체국보험에는 건강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7. 보험회사

보험회사에는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와 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에는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지급조건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보장성보험인 사망보험(종신보험), 피보험자가 만기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통상 피보험자 사망시 별도의 사망급부금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교육보험, 연금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거나 만기일까지 생존한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보험기간중 사고로 인한 장애 또는 질병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질병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상품은 부보위험에 따라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만기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기능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을 겸비한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8. 증권회사

증권회사는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 인수 및 매출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이 밖에도 증권업 관련 부수업무로 증권저축,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주요 저축상품으로는 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채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으며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을 대행 판매하고 있습니다.

## 9. 증권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촉진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증권의 취득, 인수, 보유 및 매매와 관련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증권을 대여해 주는 업무와 투자자 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일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증권금융(주)이 이러한 증권금융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상품에는 실권주청약예수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금융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증권회사, 선물회사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일임업자	투자자문사
	신탁업자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신탁회사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기타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증권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은행지주, 비은행지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금융보조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신용정보회사 자금중개회사	

\* 농업협동조합공제, 수산업협동조합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 새마을금고공제

## 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상품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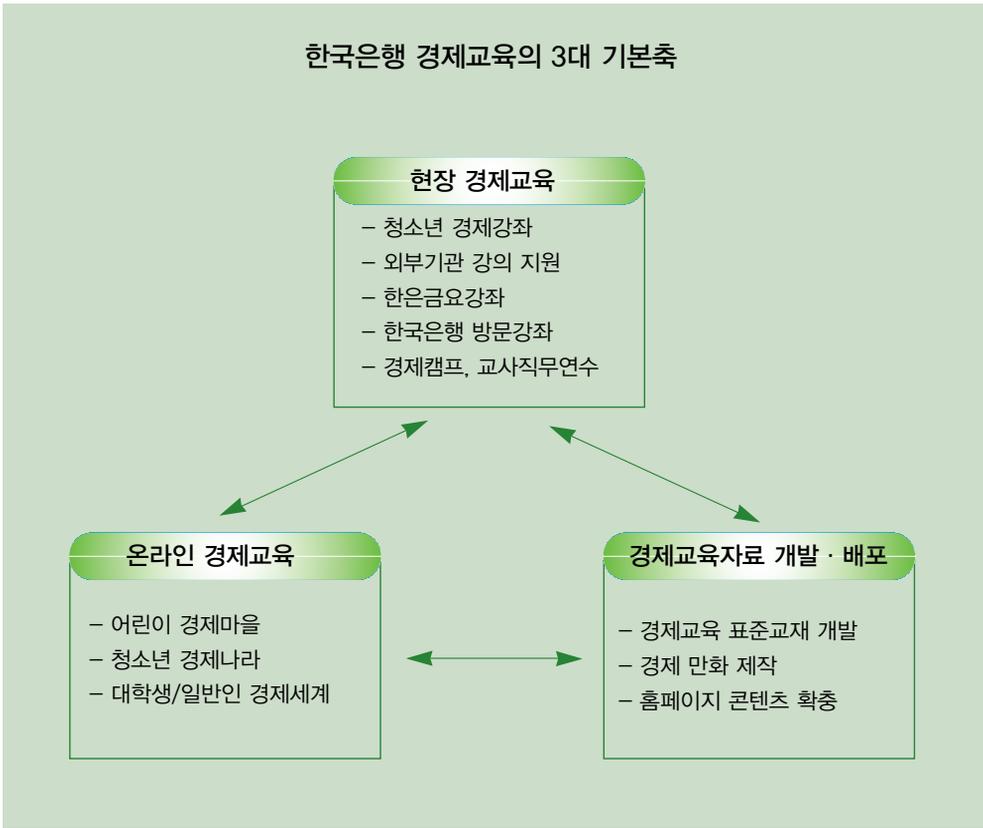
구분	취급상품	장점	단점
은행 (농·수협중앙회 포함)	(주요상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신탁상품, CD·RP 등 시장성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부대 서비스</li> <li>- 광범위한 점포망 및 이용편리성</li> <li>- 대출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적 낮은 예금금리</li> <li>- 중도해지시 낮은 금리 적용</li> </ul>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정기적금, 상호부금, 정기예금, 실세금리연동형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금융채, 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특정금전신탁, 퇴직신탁, 생계형저축		
종합금융회사	(주요상품) CMA, CP, 발행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고수익</li> <li>- 거액고객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대출 불가</li> <li>- 점포수 적음</li> <li>- 최소 가입금액 큼</li> </ul>
	기업어음(CP),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생계형저축		
상호저축은행	(주요상품) 예금, 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수익</li> <li>- 대출절차 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신용도 낮음</li> <li>- 점포수 적음</li> </ul>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용부금, 표지어음, 생계형저축		
상호금융 (지역농·축협, 지부별수협, 지역 산림조합)	(주요상품) 출자금, 예탁금, 적금	- 고수익	- 기관신용도 낮음
	출자금,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금공제, 생계형저축		
신용협동조합	(주요상품) 출자금, 예탁금, 적금	- 고수익	- 기관신용도 낮음
	출자금,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생계형저축		
새마을금고	(주요상품) 출자금, 예탁금, 적금	- 고수익	- 기관신용도 낮음
	출자금,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생계형저축		
자산운용회사	(주요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 고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상품은 위험도 높음</li> <li>- 개인대출 불가</li> </ul>
	단기금융상품펀드(MMF),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utual Fund), 엠브렐러펀드, 생계형펀드		

구분	취급상품	장점	단점
우체국	(주요상품) 우체국예금·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리금 100% 보장</li> <li>- 광범위한 점포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 불가</li> </ul>
	보통예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자유저축예금, 근로자우대저축, 저축예금, 환매조건부채권, 정기예금, 복리정기예금, 정기적금, 장학보험, 개인연금보험, 어린이보험, 종합건강보험, 생계형저축		
생명보험회사	(주요상품)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 혜택</li> <li>- 저축성보험도 기본적인 보장 기능을 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전 해약 시 환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li> <li>- 일반저축상품보다 수익률 낮음</li> </ul>
	보장성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어린이보험, 교육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등), 저축성보험(변액연금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양로보험)		
손해보험회사	(주요상품)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제3보험, 특종보험, 근재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퇴직연금, 장기손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 혜택</li> <li>- 저축성보험도 기본적인 보장 기능을 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전 해약 시 환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li> <li>- 일반저축상품보다 수익률 낮음</li> </ul>
	재물보험(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제3보험(상해, 질병, 장기간병보험), 특종보험(여행자보험 등), 근재보험, 보증보험, 퇴직연금, 장기손해보험(재물, 상해, 질병, 운전자, 저축성 등)		
증권회사	(주요상품) 증권저축, 채권저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수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하락시 손실 발생</li> <li>- 점포수 적음</li> <li>- 상품이 다양하지 않음</li> </ul>
	단기금융상품펀드(MMF),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증권저축, 생계형저축		
증권금융회사	실권주 청약예수금, 환매조건부채권(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수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수 적음</li> <li>- 상품이 다양하지 않음</li> </ul>

## VII.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경제교육

2000년 이후 세계화 등으로 경제가 복잡해지고 변화속도도 빨라짐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 및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중요해졌습니다. 이처럼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경제학 전공 교사와 수업시간의 부족 등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경제교육을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국민경제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2000년대 들어 각국 정부의 경제교육 강화에 발맞추어 자체 경제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국민경제교육은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자료의 개발·배포를 3대 기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제교육은 대상에 따라 크게 청소년 경제교육과 일반인 경제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대상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경제교육은 예산 및 인력 등의 제약으로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1회성 교육만으로는 충분한 경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초·중·고 교사들을 위해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교육 교재 및 자료 개발과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1. 현장 경제교육

현장 경제교육은 한국은행에서 강사가 직접 외부로 나가 교육을 실시하는 외부 기관방문 경제교육과 교육대상자가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한은방문 경제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외부기관방문 경제교육에는 청소년 경제강좌와 외부 기관 강의 지원이 있으며 한은방문 경제교육은 한은금융강좌, 한국은행 방문강좌, 청소년 경제캠프, 교사직무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가. 외부기관방문 경제교육

### 청소년 경제강좌

청소년 경제강좌는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당행 강사가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한국은행이 하는 일, 바람직한 금융생활,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신용관리의 중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외부기관 강의 지원

외부기관 강의 지원은 대학교, 경찰서, 군부대, 공공기관 등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제 기초이론,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통화정책, 경제동향 등을 주제로 당행 직원이 직접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강의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나. 한은방문 경제교육

### 한은금요강좌

한은금요강좌는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부에서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경제강좌로 당행 또는 외부 강사가 통화정책, 금융시장 및 환율 동향 등 경제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동 강좌에 대한 대학생 등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2007년부터는 동 강좌를 25회(50회)이상 수강한 사람에게 ‘한국은행 경제 기본(전문)과정’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방문강좌

한국은행 방문강좌는 대학생,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직원 등이 직접 당행을 방문하여 통화정책, 경제동향 등 경제관련 주제에 대해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동 강좌는 당행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비디오 상영, 당행 직원의 강의, 화폐금융박물관 견학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본부

의 화폐금융박물관을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말경제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경제캠프

한국은행 본부에서는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중 각 1회씩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박 4일간 청소년 경제캠프를 열어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프의 주요내용은 금융경제 강의, 산업현장 견학, 경제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캠프는 서울본부에서 뿐만 아니라 부산본부, 광주전남본부 등 일부 지역본부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교사직무연수

사회(경제)과 교사 직무연수는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사회(경제)과목 담당교사(회차당 35명 내외)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실시하는 경제교육입니다. 연수내용은 경제기초이론, 경제통계, 통화정책, 금융제도 등 경제 일반사항과 신용관리 등 청소년 금융교육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연수는 서울본부에서 뿐만 아니라 부산본부, 광주전남본부 등 일부 지역본부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온라인 경제교육

2000년대 들어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당행은 2004년 4월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에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http://youth.bok.or.kr>)을 개설하여 온라인 경제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9월에는 이 사이트를 별도의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http://www.bokeducation.or.kr>)로 확대·개편하고 기존 콘텐츠를 ‘어린이 경제마을’ 과

‘청소년 경제나라’의 2개의 사이트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이용자들이 경제 기초개념에서 금융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균형 있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매일학습, e-book, 동영상, 만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는 2006년 말 정보통신부로부터 ‘청소년 권장사이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일반 국민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교육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경제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일반인 경제세계’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는 대상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온라인 국민경제교육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경제교육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e테스트(사이버 경제교육 이수제도), 사이버 경제교육 우수학교 선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경제 글짓기, 크로스워드 낱말 맞추기 등 각종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웹 표준에 부합되도록 경제교육 홈페이지의 체제와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2012. 1월에는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용자 스마트 도우미를 개편하고 캐릭터와 음성이 지원되는 이용자 가이드를 추가하는 등 대국민 경제교육 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 3. 경제교육 자료 발간

한국은행은 1988년부터 국민들이 기초적인 경제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를 이용한 소책자와 만화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돈, 돈 이야기』, 『한국은행』 등과 같은 영상물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대국민 경제교육이 본격화된 2005년에는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용과 일반인용 등 4종으로

구성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책자는 대상자별 수준에 맞게 경제의 기초개념과 원리를 생활주변의 이야기나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고 경제이론의 설명보다는 경제현상의 이해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표나 그래프보다는 삽화를 많이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청소년 경제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경제교육 관계기관 등에 배포되었으며 당행의 청소년 경제교육에도 기본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제도변경 내용과 각종 통계자료 등을 보완하여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들이 경제의 기초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경제만화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개념들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활동수업 교재(돈과 생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 국민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금융생활 길라잡이』를 매년 개정하여 경제교육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 4. 통화정책 경시대회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통화정책 결정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으로 예선대회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7월에 개최하며, 전국 결선대회는 각 지역대회 최우수 6개팀과 서울지역 우수 2개팀 등 총 8·9개팀이 참가하여 8월에 본부에서 개최됩니다. 참가자들은 각종 경제 및 통화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경제현황 및 물가동향

을 분석하여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 등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합니다. 동 경시대회는 전국에서 100여 개 팀이 참가하고 있으며,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한국경제와 통화정책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적능력 경쟁의 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참고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미 연준(Fed Challenge), 영란은행(Target 2.0), 뉴질랜드 중앙은행(Monetary Policy Challenge) 등 선진국 중앙은행에서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 5. 화폐금융박물관의 운영

한국은행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은행이 하는 일 뿐만 아니라 화폐와 금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화폐금융박물관을 2001년 6월 12일 개관하였습니다. 이 박물관은 1912년 완공된 르네상스 양식의 석조 건물로써 한국전쟁 당시 내부가 전소된 것을 복구하여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1989년에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사적 280호로 지정된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박물관 1층에는 ‘우리의 중앙은행’, ‘화폐의 일생’, ‘화폐광장’, ‘돈과 나라경제’ 등 5개 전시실이 있으며 2층에는 ‘모형금고’, ‘세계의 화폐’, ‘체험학습실’ 등 7개 전시실이 있습니다. 각 전시실에는 과거 및 현재의 화폐, 돈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금융경제 관련 자료 등이 1만 8천여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은 유물 전시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지의 제공, 경제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현장교육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화폐문화강좌, 클래식 음악강좌, 일요영화감상, 박물관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개관 초 4만명 선에 머물던 연간 관람객 수가 작년에는 20여만명에 달하였습니다.

화폐금융박물관 전시실



한은갤러리



또한 한국은행은 보유한 미술품 중 뛰어난 작품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박물관 2층에 ‘한은갤러리’를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기획전을 개최함으로써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VIII. 한국은행 이용안내

### 한국은행 본부 · 지역본부 안내

**【본 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100-794)  
대표전화 (02) 759-4114

**【국내지역본부】**

지역본부	주소	우편번호	문의전화	FAX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12	600-091	(051)240-3700	(051)246-9954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45	700-842	(053)429-0301	(053)429-0230
목포본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109	530-270	(061)241-1000	(061)243-8066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26	502-709	(062)601-1000	(062)601-1100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25	561-835	(063)250-4000	(063)251-9032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65	302-830	(042)601-1114	(042)601-1140
충북본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	360-112	(043)220-0550	(043)220-0545
강원본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1	200-041	(033)258-3200	(033)258-3219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10	400-103	(032)880-0114	(032)880-0029
제주본부	제주도 제주시 광양9길 3	690-827	(064)720-2411	(064)720-2420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	440-822	(031)250-0114	(031)250-0111
경남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33	641-730	(055)260-5114	(055)260-5100
강릉본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63	210-040	(033)640-0100	(033)640-0199
울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둔질로 52	680-828	(052)259-7400	(052)259-7490
포항본부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	791-844	(054)289-2800	(054)289-2929
강남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135-920	(02)560-1114	(02)560-1444

## 한국은행 이용안내

구분	주요내용	연락처	
손상화폐 교환	해졌거나 불에 탄 지폐 또는 녹슬거나 변형된 동전을 새 돈으로 교환	발권국 화폐수급팀 (☎759-4626, 4634)	
위변조화폐 신고	위조 또는 변조된 돈의 신고	발권국 발권정책팀 (☎759-4530)	
통화안정증권 매입 및 상환	통화안정증권 매입 및 상환	국고증권실 증권팀 (☎759-4738)	
외국환거래 관련 상담	외국환거래법령상 한국은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 상담	국제국 외환심사팀 (☎759-5775, 5779)	
경제통계 안내	통화금융, 국민계정, 국제수지, 물가 등 한국은행이 편제하는 주요 경제통계에 대해 안내	경제통계안내센터 (ARS☎759-4400)	
경 제 강 좌 신 청	청소년 경제강좌 (초·중·고교생 대상)	한국은행의 경제전문가가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경제강좌	커뮤니케이션국 경제교육팀 (☎759-5393)
	한은방문 강좌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경제 관련 강의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	커뮤니케이션국 경제교육팀 (☎759-4647)
	외부기관 강의지원	한국은행 경제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자 할 경우 신청	
	한은금융강좌	한국은행(본부)에서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경제 관련 강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신청	커뮤니케이션국 경제교육팀 (☎759-4128)
화폐금융박물관 관람	국내외 화폐 18,000여점 관람 및 한국은행에 대한 이해 · 관람시간 : 매주 화~일요일 10:00~17:00 · 휴관일 : 월요일, 설연휴 및 추석연휴 12월 29일부터 다음해 1월 2일	커뮤니케이션국 홍보운영팀 (☎759-4881~2)	
한국은행 자료의 열람 및 구입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각종 자료의 열람 및 구입 등 안내 · 열람 및 구입처 : 한국은행 본부 화폐금융 박물관내 자료안내실 및 서적/기념품 코너	자료안내실 (☎759-4230) 서적/기념품 코너 (☎759-4805)	
민원안내	한국은행의 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 안내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 (☎759-4054)	

\* 위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도 게재

## 한국은행 홈페이지 안내

구분	수 록 정 보			
메 인(국 문) (www.bok.or.kr)				
통 화 정 책	· 통화정책의 목표 · 통화정책운영체제 · 금융통화위원회	· 통화정책방향 · 통화정책수단 ·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통화정책 관련법규	· 중소기업 금융지원 ·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금융시스템	· 금융안정 · 지급결제제도	· 국고 · 증권제도	· 금융경제동향	· 금융생활정보
화 폐	· 은행권 · 주화	· 주화수급정보센터	· 홍보교육자료	· 화폐관련 법규 및 서식
조사 · 연구	· 최신자료 · 주제별자료	· 종류별자료 · 지역본부자료	· 국외사무소자료 · 북한경제자료	· 조사표
외환 · 국제금융	· 외환 · 국제금융제도 개요 · 외환정책 · 제도	· 외환시장 · 환율 · 국제금융모니터링	· 외환보유액	· 국제협력
보도 · 법규자료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컨퍼런스/세미나 · 강연 및 연설문	· 법령/규정자료	· 기타 참고자료
민원 · 참여마당	· 민원 · 외환거래심사업무안내	· FAQ · Q&A	· 토론광장 · 통화정책경시대회	· 경제교육 · 뉴스레터서비스
한은소개	· 총재소개 · 일반현황 · 경영정보	· 채용정보 · 계약정보	· 사회공헌 · 한은소식	· 이용안내 · 오시는길
지 역 본 부	· 지역경제정보 · 중소기업 지원자금	· 경제교육 · 주화수급정보센터	· 민원 · 토론광장	· 본부안내
메 인(영 문) (eng.bok.or.kr)	· Monetary Policy · Financial Stability	· Payment Systems · FX & Int'l Relations	· Research Papers · Currency	· Press Releases · About BOK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 ECOS 안내 · 통계검색	· 테마별통계 · 통계공표일정	· 통계연구/간행물 · 고객지원	· My STAT
한국은행 경제교육 (bokeducation.or.kr)	· 이용자스마트도우미 · 온라인경제교육 · 현장경제교육			
경제연구원 (imer.bok.or.kr)	· 경제연구원 안내	· 연구포럼	· 학술회의	· 자료실
화폐금융박물관 (museum.bok.or.kr)	· 박물관 소개 · 전시실 둘러보기	· 전시물 검색 · 참여마당	· 이용예약 · 알림마당	· 자료실
<p>♣ 뉴스레터서비스 안내 : 뉴스레터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수록되는 새로운 자료를 E-mail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p> <p>♣ 문의처 : 커뮤니케이션국 홍보전략팀 ☎(02)759-4763 (E-mail) publicinfo@bok.or.kr</p>				

## 참고

## 금융기관 이용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전화번호

-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제기된 민원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www.fss.or.kr)
- ◆ 예금보험공사(☎02)758-0114) : 예금보험제도 적용대상 여부 및 예금보험금 수령안내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합니다.(www.kdic.or.kr)
- ◆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02)3705-5000) :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에서는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안내, 신용정보 관련 민원상담, 신용정보 조회, 카드현금서비스 조회, 신용불량정보 기록 안내, 상속자 예금 조회, 은행연합회에서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한 사항의 민원관련업무, 금융소득·이자과세 방법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www.kfb.or.kr)
  - \* 신용정보안내 - 자동응답서비스 (☎1544-1040)
- ◆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자동응답서비스센터(국번없이 ☎1369) : 통장 잔액, 무통장 입출금 내역, 사고수표, 신용카드 거래내용, 환율 조회 등 모든 은행의 주요 금융정보를 금융결제원 자동응답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kftc.or.kr)

# 2012년 금융생활 길라잡이

---

---

2012년 5월 일 발행

발행인 : 김 중 수  
편집인 : 이 용 회  
발행처 : 한국은행  
제 작 : 상상스토리(주)

---

---

이 자료에 관한 문의 또는 제안은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02)759-5385]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